월간

재정포럼

2020. December_Vol.294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2

권두칼럼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하여 | 류덕현

현안분석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 개선방안
: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 원종학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 최인혁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바이든 정부 세제 개편 제안 외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재정포럼

2020.12 Vol.294
월간 재정포럼 2020년 12월호 **통권** 제294호_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4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하여 | 류덕현 02

현안분석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 개선방안
: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 원종학 08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 최인혁 3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바이든 정부 세제 개편 제안 외 56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하여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최근 급증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이 재정정책 현안의 중심에 놓여 있다. 현재의 재정확장에 대한 계산서로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재정수지 적자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논쟁, 그리고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화 논쟁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채무의 지속가능성은 한 국가의 채무가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가능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그렇다면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따져보아야 할 조건들이 무엇이며 이러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용인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 및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있다. 2019년 국가채무 비율 37.2% 가운데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비중은 각각 57:43이다. 이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2019년에 일반회계 적자 상환용 국채,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순수한 빚으로 환산되는 국채비율은 21.2%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부담 능력은 감당할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국가채무의 만기 및 만기도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국채의 평균 만기는 2015년 7.2년에서 2019년 9.7년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잔존 만기가 3년 미만인 국가채무 비중은 감소 추세이고 10년 이상 장기물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2020~2068년까지 분산하여 상환할 예정인 2019년 국가채무는 잔존 만기가 1년 미만인 국채 비중이 7.3%, 1~3년 미만은 19.4%, 3~5년 미만은 18.9%, 5~10년은 23.5%, 10년 이상은 30.8%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국채 자금 조달 관련 이자율의 추이에 대한 조사이다. 2020년 4월에 발간된 IMF의 *Fiscal Monitor*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이자율은 지난 100년 이래 최저 수준이며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조원으로 전년 대비 7천억원 감소하였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채 이자율 하락 추세는 국제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비록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국채 이자부담은 적어도 5년 정도의 중기적 시계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명목 경제성장률이 이자률을 상회하기만 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이른바 음(-)의 '이자율 마이너스 성장률'(negative r minus g) 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020년을 예외로 하면 당분간 이러한 음(-)의 '이자율 마이너스 성장률' 관계가 예측된다는 점에서 채무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미시적 구조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채는 잔존 만기 1년 이하 단기 채무 비중이 7.3%로 주요 선진국 평균(20.4%)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채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10년대 이래 10%대로 선진국 평균 25.7%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이 있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부담 능력은 감당할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정준칙 준수 시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증대나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반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지출감축이나
조세증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준칙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재정건전화

2020년 9월에 정부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제안하였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정부지출, 국가채무 비율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정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우선, 재정준칙은 사전에 설정된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경기침체나 수축기보다 호황기에 훨씬 쉽다. 따라서 재정준칙은 경기순행적(pro-cyclical)이 되는 부작용이 있다. 즉, 재정준칙을 준수하다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증대나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반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지출감축이나 조세증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확장재정을 채택할 경우 재정준칙은 경기의 완전한 회복을 지연시키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긴축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실례로 유럽연합이 2011년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 긴축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여 경기회복을 지연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분식회계(creative accounting)나 준칙 준수기한을 옮겨서 적용하는 윈도우 드레싱(window dressing) 등의 수법으로 재정준칙을 쉽게 피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자본을 투입해 지출을 집행하는 경우 스톡-플로우 조정(SFA)이 증가하는데, 공기업 지출사업은 재정지출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유럽연합은 최근 유연성 확대, 모니터링 강화, 재정정책 집행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수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연합 내 특정한 목적(통화동맹체 유지 등)이나 재정건전성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고 논의해야 할 제도적 논의사항이 많다. 가령, 준칙수단의 선택(채무, 지출 등), 강도 및 예외 규정에 대한 적용, 정부범위의 설정, 독립적 재정기구 설립 등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안한 60%의 국채비율 상한선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그

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치적인 채무 상한선과 재정수지 적자폭을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그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에 존재하는 여러 재정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도입하여 이를 '암묵적 재정준칙'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재정확장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으며 향후 경기가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성장여력이 회복되었을 때 재정준칙의 도입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KIPF

향후
경기가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성장여력이
회복되었을 때
재정준칙의 도입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안분석

■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 개선방안**
: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 개선방안 :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weon@kipf.re.kr)

Ⅰ. 서론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면 예외 없이 최소한 풍부한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훈련된 인적 자원이 풍부한 경우였으며, 대부분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경우였다.

물적·인적 자원이 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물적·인적 자원을 무한정 증대시킬 수는 없으며, 물적·인적 자원의 물리적 생산성은 체감하므로 이들의 투입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경제발전이 투입량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물적·인적 자원의 투입에 의한 성장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기술 혁신, 즉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가 모두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정보기술산업의 대두와 함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시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이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연구개발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기존 기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초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왔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 현재 규모로 세계 5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018년 7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현황과 성과에 관해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1)]

>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느냐, 기존 성과에 머무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연구개발(R&D) 혁신에 있습니다. 우리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투자액으로 봐도 세계 상위이거니와 GDP 대비 비율로 보면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중략) 한편으로 우리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중략)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현재 매년 5만개가 넘는 정부 R&D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에 유리한 단기성과 과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기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착오나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 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제 개편에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청와대, 2018, p. 204~206)*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여타의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양호하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체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평가결과는 양호한데 수준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사업만 수행한다는 지적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행이 필요하므로 1년 단위의 평가를 지양하여야 하며, 평가 자체는 과학기술을 잘 알고 이해하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성과관리를 하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인가? 전문가가 평가를 하면 보다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현황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연구개발 투자, 특히 기초연구개발 투자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기초연구개발 투자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청와대(2018)

국내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민간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증가 속도도 민간이 더 빠르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Ⅱ. 연구개발 투자 현황

1. 연구개발비 현황 및 추이

<표 1>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추이를 재원별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특징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1990년의 3조 2,105억원에서 2018년에는 85조 7,229억원으로 지난 28년간 약 27배 정도 증가하였다. 연도별 증가율을 단순 평균하면 12.7% 정도이며, 이 기간 중 연구개발비가 감소한 시기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단 한 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둘째, 재원별로 보면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외국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공공부문이 대략 20~30% 정도이며 민간부문이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2] 즉,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민간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증가 속도도 민간이 더 빠르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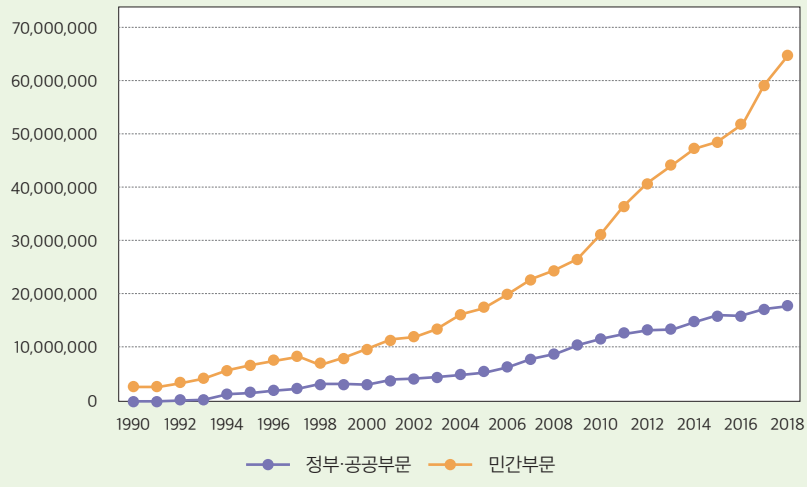

출처: <표 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외국부문은 2016년까지 전체 연구개발비의 1% 미만 수준이었으며, 2017년과 2018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에도 전체 연구개발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체 연구개발비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 외국부문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표 1>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정부·공공부문		민간부문		외국부문		합계	
	연구개발비	구성비	연구개발비	구성비	연구개발비	구성비	연구개발비	증가율
1990	510,789	15.9	2,698,859	84.1	839	0.0	3,210,486	-
1991	808,464	19.4	3,342,601	80.4	7,376	0.2	4,158,441	29.5
1992	856,882	17.2	4,110,546	82.4	21,603	0.4	4,989,031	20.0
1993	1,026,617	16.7	5,113,985	83.1	12,381	0.2	6,152,983	23.3
1994	1,880,222	23.8	6,011,453	76.1	3,071	0.0	7,894,746	28.3
1995	2,289,131	24.2	7,150,144	75.7	1,331	0.0	9,440,606	19.6
1996	2,850,638	26.2	8,013,779	73.7	13,635	0.1	10,878,051	15.2
1997	3,344,814	27.4	8,829,196	72.5	11,796	0.1	12,185,807	12.0
1998	3,491,103	30.8	7,837,081	69.1	8,433	0.1	11,336,617	-7.0
1999	3,574,370	30.0	8,340,040	70.0	7,342	0.1	11,921,752	5.2
2000	3,816,850	27.6	10,023,405	72.4	8,245	0.1	13,848,501	16.2
2001	4,361,534	27.1	11,673,266	72.5	75,722	0.5	16,110,522	16.3
2002	4,739,957	27.4	12,508,848	72.2	76,277	0.4	17,325,082	7.5
2003	4,876,225	25.6	14,113,599	74.0	78,858	0.4	19,068,682	10.1
2004	5,446,050	24.5	16,630,869	75.0	108,424	0.5	22,185,343	16.3
2005	5,973,784	24.7	18,004,157	74.5	177,472	0.7	24,155,414	8.9
2006	6,786,698	24.8	20,469,436	74.9	89,569	0.3	27,345,704	13.2
2007	8,175,936	26.1	23,055,735	73.7	69,706	0.2	31,301,377	14.5
2008	9,248,057	26.8	25,143,875	72.9	106,122	0.3	34,498,054	10.2
2009	10,887,136	28.7	26,963,045	71.1	78,321	0.2	37,928,502	9.9
2010	12,270,228	28.0	31,489,621	71.8	94,986	0.2	43,854,834	15.6
2011	13,002,404	26.1	36,776,187	73.7	111,828	0.2	49,890,419	13.8
2012	13,822,078	24.9	41,437,795	74.7	190,243	0.3	55,450,116	11.1
2013	14,241,744	24.0	44,879,193	75.7	180,012	0.3	59,300,949	6.9
2014	15,275,007	24.0	48,008,280	75.3	450,839	0.7	63,734,127	7.5
2015	16,293,518	24.7	49,169,995	74.5	495,859	0.8	65,959,372	3.5
2016	16,410,047	23.6	52,345,867	75.4	649,616	0.9	69,405,530	5.2
2017	17,737,134	22.5	60,064,289	76.2	987,764	1.3	78,789,187	13.5
2018	18,363,011	21.4	65,702,768	76.6	1,662,936	1.9	85,728,715	8.8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0. 8. 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1998년 외환위기 때만 감소하고, 1990~2018년 동안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증가해 왔다.

OECD 국가의 평균적인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99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구개발비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같은 시기의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2]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간 줄었으나,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GDP보다 연구개발비가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990년 이후 증대되고 있는 연구개발비 총액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의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경제규모 확대라는 변수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99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0년에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던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른 나

[그림 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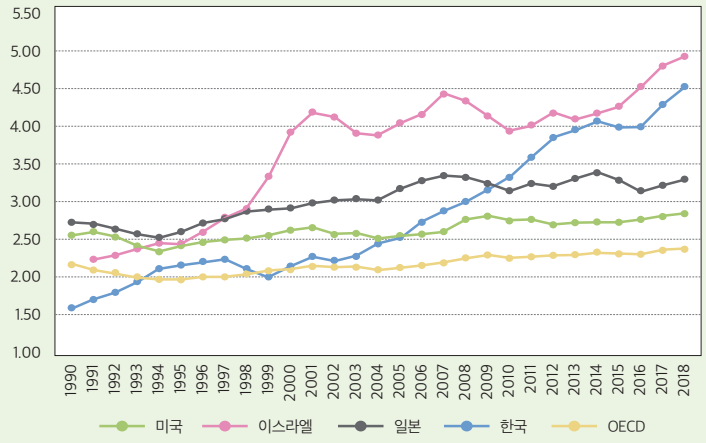

출처: OECD Data,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 검색일자: 2020. 8. 1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와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셋째,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었다.[3] 그러나 이스라엘은 2020년 현재 인구가 약 92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규모이므로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로 한정하여 본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여기서, 연구개발비 총액은 당연히 경제규모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은 2018년의 국가별 연구개발비를 구매력 평가지수 환율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2018년 현재 연구개발비 총액을 보면, 미국이 5,816억달러로 1위이며, 중국이 4,680억달러로 2위이다. 3위인 일본의 연구개발비가 1,713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비 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985억달러로 일본과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프랑스, 영국, 이탈리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연구개발비 수준은 높으나 GDP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2018년)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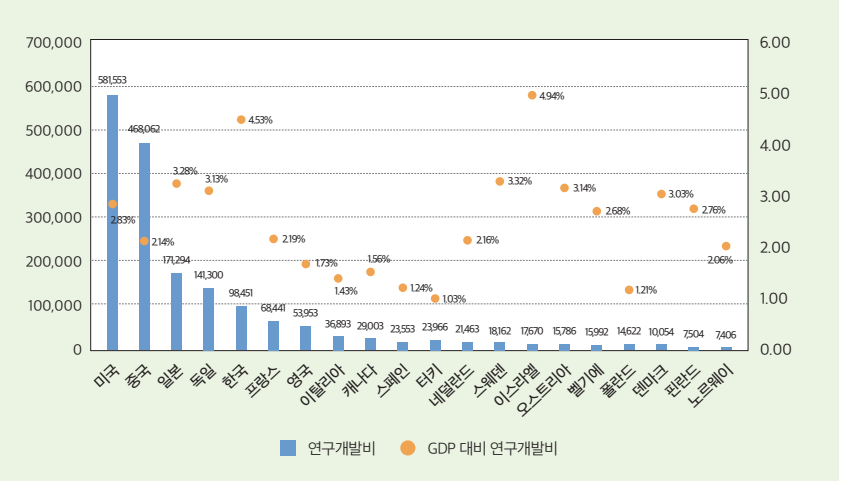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STI_PUB, 검색일자: 2020. 8. 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2012년 이후는 기준이 되는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양국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1.1조원에서 2019년 20.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아와 같은 G7 국가보다 많은 금액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어, 연구개발비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이미 세계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울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4%를 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연구개발비 수준은 높으나 GDP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4] 참조), 예산은 2008년 11.1조원에서 2019년 20.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정부 예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9년 3%대로 증가한 이후 2001년에는 4%, 2010년에는 5.18%로 증가한 후 5%대를 유지하다 2018년 4.94%, 2019년 4.67%로 4%대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다시 5.03%로 증가하였다.[4)]

[그림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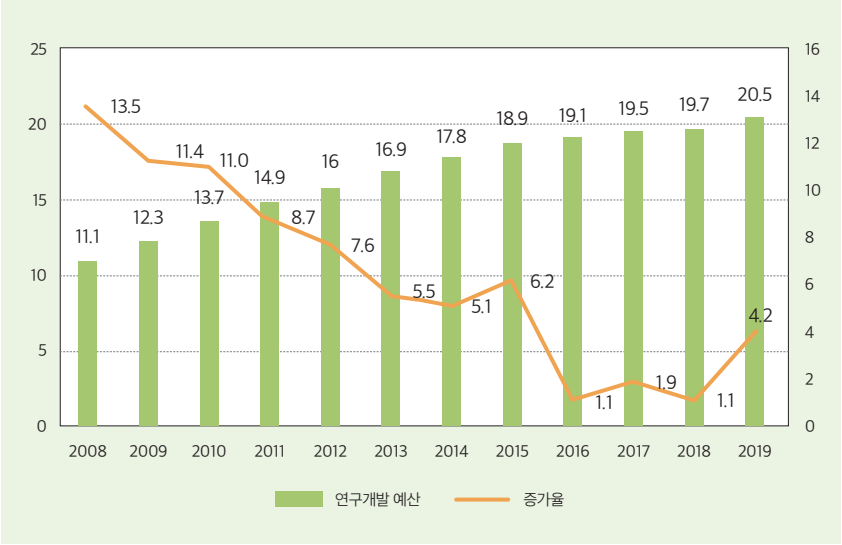

출처: 한웅용·김주일(2020), p. 16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연구개발에 관한 데이터는 한웅용·김주일(2020), p.164를 참조하였다.

2. 연구개발사업의 종류와 재원

연구개발은 크게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5]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기초연구는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1차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를 말한다. 응용연구는 기초연구의 결과로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 연구를 가리킨다. 개발연구는 기초·응용 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구는 10년 이상의 연구기간에 10% 이하의 성공률을 보이며, 응용연구는 5년에 30% 정도, 개발연구는 1년 이하에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주요 국가들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비율은 [그림 5]와 같다.

연구개발 종류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 순으로 비중이 높고, 영국과 프랑스는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비중이 높으며, 중국은 연구개발비의 80% 이상이 개발연구이며 기초연구는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가별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20%, 응용연구 20%, 개발연구 6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주요국의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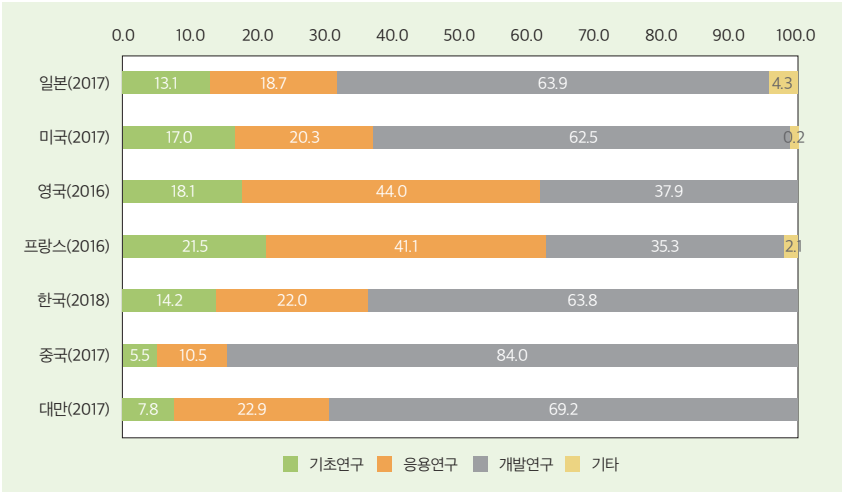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검색일자: 2020. 8. 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이러한 구분은 OECD의 구분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ECD(2002)를 참조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을 보면 유럽 국가들은 정부·공공부문의 비율이 높은 반면, 동아시아 국가는 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

<표 2> 주요국 총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

(단위: %)

구분	한국 (2017)	미국 (2017)	중국 (2017)	일본 (2017)	독일 (2016)	프랑스 (2015)	영국 (2016)
민간	76.2	63.6	76.5	78.3	65.2	54.0	51.8
정부·공공	22.5	30.3	19.8	21.1	28.8	38.3	32.7
외국	1.3	6.1	3.7	0.6	6.0	7.6	15.5

주: 국가별 연구개발비는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로 구매력 평가지수(PPP) 환율이 적용된 자료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 p. 28

일본과 미국은 개발연구가 대략 60% 정도이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30~40%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대략 기초연구 20%, 응용연구 20%, 개발연구 6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로 연구개발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특정한 경향을 찾아내기 어려우나,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을 나타낸 <표 2>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표 2>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연구개발비가 많은 나라들의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표 2>로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의 비율이 높으며, 중국과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는 정부·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75% 이상으로 연구개발이 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의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미국도 연구개발비에 관해서는 정부·공공부문이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한국, 일본, 중국에 비해 외국부문으로부터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은 이익을 얻어야 할 동기가 정부·공공부문에 비해 강하므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보다는 개발연구에, 정부·공공부문은 기초연구나 응용연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와 <표 2>로부터, 정부·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기초 및 응용 연구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의 비율이 높은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개발비의 재원과 연구 유형 사이에 일정 수준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내용은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2017~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

<표 3> 2017~2019년 우리나라 연구 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

주체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93,927	100.00	197,759	100.00	206,254	100.00
국·공립연구소	10,016	5.16	10,245	5.18	10,527	5.10
출연연구기관	78,838	40.65	80,502	40.71	82,597	40.05
대학	44,052	22.72	45,365	22.94	50,278	24.38
대기업	4,192	2.16	4,162	2.10	3,735	1.81
중견기업	9,504	4.90	10,692	5.41	14,165	6.87
중소기업	31,686	16.34	31,840	16.10	30,910	14.99
정부부처	4,692	2.42	2,993	1.51	1,829	0.89
기타	10,948	5.65	11,960	6.05	12,212	5.92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검색일자: 2020. 8. 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7~2019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별 예산 사용액을 보면 출연연구기관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한다.

별 예산 사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체는 출연연구기관으로 3년 모두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부처 직할 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 등이 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대학이며, 대학의 비중은 지난 3년간 증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된 주체인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대학은 이윤을 얻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국가가 예산을 투여하는, 즉 정부·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을 경우 기초연구나 응용연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한가? 어떤 특정 사업에 투자, 즉 비용을 투입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편익(benefit)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 혹은 발생한 편익이 투입한 비용보다 적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업은 실시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편익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종 편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결과(outcome)보다는 중간 과정의 결과나 산출물(output)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원칙은 이론상으로는 매우 명확하며 간단하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측정의 문제로 인해 실제 이를 적용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연구개발 역시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용-편익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업성과의 대부분에 대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구개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는 연구개발의 속성상 그 결과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다른 연구나 공공사업 개발의 기초 재료로 이용되는 등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결과 자체를 화폐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종 편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평가에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종 결과(outcome)보다는, 중간 과정의 결과나 산출물(output)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구개발사업 중간 결과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발표논문 수와 발표논문의 피인용지수가 있다.[6]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2007~2017년의 논문 수와 연구원 수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논문은 SCI 등재지의 논문이며, 연구원 수는 상근연구원 기준이다.

<표 4> 연구논문 수와 연구원 수

(단위: 편,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논문 수 (A)	29,733	34,515	38,053	38,053	46,270	50,364	52,833	55,770	58,785	60,185	60,529
세계 순위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세계 점유율	2.64	2.83	2.93	3.11	3.21	3.37	3.36	3.45	3.53	3.52	3.51
연구원 수 (B)	221,928	236,137	244,077	264,118	288,901	315,589	321,842	345,463	356,447	361,292	383,100
연구원당 논문 수 (A/B)	0.134	0.146	0.156	0.144	0.160	0.160	0.164	0.161	0.165	0.167	0.158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 p. 47

6) 발표된 논문 수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논문이 어느 정도 인용되고 있는가 등 질적인 측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표 5> 연구논문 피인용 실적

(단위: 편, %)

국가	피인용 상위 1% 논문 (2007~2017년 게재)			전체 논문 (2007~2017년 게재)			상위 1% 논문 비중
	순위	논문 수	점유율	순위	논문 수	점유율	
전체	-	148,225	100.00	-	14,764,333	100.00	1.00
미국	1	74,400	50.19	1	4,052,012	27.44	1.84
중국	2	23,869	16.10	2	2,249,982	15.24	1.06
영국	3	23,469	15.83	3	1,138,886	7.71	2.06
독일	4	18,264	12.32	4	1,075,011	7.28	1.70
캐나다	5	12,184	8.22	7	667,114	4.52	1.83
프랑스	6	12,029	8.12	6	752,321	5.10	1.60
호주	7	10,419	7.03	11	546,896	3.70	1.91
이탈리아	8	9,553	6.44	8	646,554	4.38	1.48
네덜란드	9	9,390	6.33	14	386,031	2.61	2.43
스페인	10	8,046	5.43	10	558,320	3.78	1.44
스위스	11	7,653	5.16	16	286,005	1.94	2.68
일본	12	7,268	4.90	5	859,312	5.82	0.85
스웨덴	13	5,120	3.45	19	257,637	1.74	1.99
벨기에	14	4,662	3.15	22	212,800	1.44	2.19
한국	15	4,396	2.97	12	521,991	3.54	0.84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 p. 48

SCI 등재지 발표논문이 2배 이상 증가한 기간에 연구개발비 또한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보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와 발표된 논문 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이 양적 증대에 비해 질적 증대가 동반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체계를 들 수 있다.

먼저 논문 수를 보면, 2007년에는 2만 9,733편이었던 SCI 등재지 발표논문이 2017년에는 6만 529편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증가와 발표된 논문 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원 수도 유사한 움직임으로 2007년 약 22만 2천명에서 2017년에는 약 38만 3천명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연구원 수의 증가보다는 연구논문 수의 증가가 더 빨라, 같은 시기 연구원 1명당 논문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논문의 발표는 증대하였으나, 세계 시장에서의 순위를 보면 2007년에 12위였으며 2017년에도 12위로 변화가 거의 없다. 이는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한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논문 수로 확인한 연구개발의 양적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적 증가는 어떠한가? 논문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수단의 하나로 논문의 피인용횟수가 있다.

<표 5>는 2007~2017년간의 논문 수와 이 논문들 가운데 인용이 많이 되는 상위 1%의 논문 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 논문 수가 주요국 가운데 12위인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007~2017년 사이에 발표된 52만 1,991편의 논문 가운데 인용도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은 4,396편으로 15위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상위 1%에 포함되는 논문의 비중은 전체 발표논문의 0.84%에 지나지 않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전체 발표논문 중 피인용도가 1%에 미달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발표논문 수에 비해 인용되는 논문이 적다는 것은 연구 자체는 많이 하고 있으나,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왜 연구개발의 경우 양적인 증대에 비해 질적인 증대가 동반되고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사업, 특히 기초연구의 경우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산사업 평가체계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연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연구개발도 이러한 유인체계에 맞추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에 보다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의 슈퍼컴퓨터 K 개발사업의 사례를 들어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평가의 어려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슈퍼컴퓨터 K 개발 사례를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평가의 어려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 슈퍼컴퓨터 K의 사례를 중심으로

슈퍼컴퓨터 K는 일본의 이학연구소와 후지쯔가 공동으로 개발한 슈퍼컴퓨터로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산속도가 가장 빠른 컴퓨터로 인정되었다. 컴퓨터의 연산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부동소수점 연산처리 속도가 있다. 1초당 1경을 넘는 연산 속도를 기록한 최초의 컴퓨터였으므로 컴퓨터 이름을 경(京)으로 하였는데, 경의 일본어 발음이 '케이(Kei)'이므로 슈퍼컴퓨터 K로 이름을 정하였다. 슈퍼컴퓨터 K의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꼭 최고 성능의 컴퓨터를 개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로 화제가 되었으며, 1위에서 물러난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다가 2019년 이학연구소에 후가쿠(Fugaku)라는 새로운 슈퍼컴퓨터가 설치됨에 따라 해체되었다.

1.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란, 과학기술 연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연산을 초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말한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부동소수점 연산처리 능력으로 표시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되어야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예컨대 1980년대의 슈퍼컴퓨터보다 현재 우리가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슈퍼컴퓨터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미국의 맨하임 대학과 테네시 주립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Top500라는 사이트에서 매년 두 차례씩 일정 테스트를 통해 연산 능력이 가장 뛰어난 컴퓨터의 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의 Top500의 슈퍼컴퓨터 순위는 <표 6>과 같다.[7]

7) Top500 The List, https://top500.org에서 슈퍼컴퓨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OP500 외에도 Green500, HPCC, Graph500 등에서 서로 다른 성능 기준에 의한 순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이 다른 만큼 순위에 다소 차이는 존재한다.

슈퍼컴퓨터의 순위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여 많은 나라에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

<표 6> 슈퍼컴퓨터 순위

2019년 11월			2020년 8월		
순위	국가	시스템	순위	국가	시스템
1	US	Summit	1	Japan	Supercomputer Fugaku
2	US	Sierra	2	US	Summit
3	China	Sunway TaihuLight	3	US	Sierra
4	China	Tianhe-2A	4	China	Sunway TaihuLight
5	US	Frontera	5	China	Tianhe-2A
6	Switzerland	Piz Daint	6	Italy	HPC5
7	US	Trinity	7	US	Selene
8	Japan	AI Bridging Cloud Infrastructure	8	US	Frontera
9	Germany	SuperMUC-NG	9	Italy	Marconi-100
10	US	Lassen	10	Switzerland	Piz Daint
…	…	…	…	…	…
14	Korea	Nurion	17	Korea	Nurion

출처: Top500 The List, https://top500.org, 검색일자: 2020. 8. 2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슈퍼컴퓨터의 순위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여 많은 나라에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가장 많은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순이나 중국이 전체의 45.2%, 미국이 22.6%로 중국과 미국이 전체의 70% 가깝게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한편 슈퍼컴퓨터의 성능에 관한 조사(performance share)에서는 미국 28.2%, 중국 25.5%, 일본 23.9%로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일본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량에서는 중국, 성능에서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일본이 성능 면에서는 미국, 중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성능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 8월 현재 연산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컴퓨터가 일본의 후가쿠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후가쿠 이전에는 미국의 서밋(Summit)이 2년 정도 1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이 슈퍼컴퓨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11년 슈퍼컴퓨터 K 이후 9년 만이다.

슈퍼컴퓨터는 고속연산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방대한 양의 계산과 시뮬레이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슈퍼컴퓨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를 슈퍼컴퓨터 K 개발 시 제시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① 고속으로 반응하면서 소비전력이 적은 차세대 반도체 재료, 특히 실리콘 나노 와이어(nano wire), 탄소 나노 튜브 등 나노 전자장치 재료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해석하여 조기 개발에 공헌, ② 방대한 양의 약재 후보 물질 가운데 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화합물을 예측함으로써 신약 개발기간의 단축이나 개발비용 절감에 공헌(신약 개발에 응용), ③ 색소 증감형 태양전지의 원자·전자 레벨에서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 개발에 공헌, ④ 대기대순환 모델을 해상도 400m의 고해상도로 시뮬레이션하여 집중호우 등 국소 현상을 해명하는 고정도의 기상예측 정보의 제공 등이었다.

2009년 정권 교체를 이룬 일본은 세출 억제를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세출, 즉 실시하고 있는 정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사업분류와 슈퍼컴퓨터 케이(京, K)

2009년 정권 교체를 이룬 일본의 민주당은 세출 억제를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세출, 즉 실시하고 있는 정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의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내세운 정책은 사업분류(事業仕分け)였다.[8)]

예산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 효율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 사업분류는 일본에서 처음 실시되었다.[9)] 민주당이 실시한 사업분류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가하였으며, 그 과정을 공개하여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이기도 하였다. 사업분류의 결과는 당초에 예상하였던 만큼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예산편성 및 재정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009년의 사업분류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차세대 슈퍼컴퓨팅 기술(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이었다. 즉, 사업분류 결과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은 비용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예산 삭감이 권고되었다. 이 권고에 대해 이공계가 크게 반박을 하며 여론을 통해 압박을 가하였다. 이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일본의 사업분류에 관한 설명은 원종학(2010)을 참조
9) 지방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실시한 사업분류는 당초 예상한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예산편성 및 재정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7> 슈퍼컴퓨터 개발비 비교

시스템	국가	개발비(엔)	운용비(억엔/년)	성능(petaflops)[1)]	비고
K	일본	1,120	80	10,000	2011.6~2011.12
Sequoia	미국	200	-	16,320	2012.6
Tianhe-I	중국	71	16	2,566	2010.11~2011.6(1)
TSUBAME2.0	일본	34	2	1,192	2010.11~2011.6(4)
Roadrunner	미국	118	-	1,375	2008.6~2009.11
Blue Gene/L	미국	90	-	596	2004.11~2008.6
Earth Simulator	일본	600	50	35.86	2002.6~2004.6

주: 1) 1초당 1천조번의 수학 연산처리를 뜻함

출처: Wikipedia(Japan), https://ja.wikipedia.org/wiki/京_(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 검색일자: 2020. 8. 10.;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_computer; 검색일자: 2020. 8. 10.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우선 2009년 사업분류를 위해 슈퍼컴퓨터 K 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자. 슈퍼컴퓨터 K 개발사업은 2005년 문부과학성과 이화학연구소에서 차세대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06년 국가 프로젝트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후지쯔, NEC, 히타치 3사와의 공동 프로젝트였으나 2009년 5월 NEC와 히타치가 개발에서 탈퇴하여 이학연구소와 후지쯔가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비용을 보면 시스템 개발에 793억엔, 소프트웨어 개발에 126억엔, 시설설치에 193억엔의 총 1,111억엔을 계획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1,120억엔 정도가 소요되었다. 2009년 사업분류에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 당시 이미 700억엔 이상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슈퍼컴퓨터의 개발비용이 다른 나라의 슈퍼컴퓨터 개발에 비해 몇 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슈퍼컴퓨터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 슈퍼컴퓨터 K가 완성되었을 때의 주요 슈퍼컴퓨터 개발비와 운용비를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먼저 개발비를 보면 슈퍼컴퓨터 K의 개발비가 1,120억엔으로 2002년에 개발된 일본의 Earth Simulator 개발비 600억엔보다 2배 정도 많으며, 슈퍼컴퓨터 K에 이어 세계 1위를 차지한 미국의 Sequoia보다는 5.5배, 슈퍼컴퓨터 K 이전 1위였던

중국의 Tianhe-I보다는 15배 이상 많은 비용이 들었다.[10]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 슈퍼컴퓨터 개발 및 유지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개발비, 유지비 모두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본만이 유난히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 등을 반영하여 2009년 사업분류에서는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의 유효성, 즉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엄중하게 추궁하였다. 당시 슈퍼컴퓨터 K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① 고속·고정도 시뮬레이션에 의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예: 에너지 절약형 반도체 개발, 바이러스 움직임 해석으로 시약 개발), ② 국가에 필요한 최첨단 IT의 획득(예: 초미세 반도체 프로세스 등), ③ 기후변화 문제에 공헌(지구온난화 문제 대책 입안에 꼭 필요함), ④ 산업 경쟁력 강화(경제효과 3.4조엔, 효과사례 8,400억ps, 기본 특허 획득 4,300억엔) 등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분류를 담당하였던 평가자들은 슈퍼컴퓨터 K 개발 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업분류에서 지적된 주요 평가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1]

- 10페타 슈퍼컴퓨터 개발이 자기 목적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슈퍼컴퓨터의 개발이 아니라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떠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가이다.
- 10페타 슈퍼컴퓨터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요구)는 실제로 있는가?
- 속도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이다. 예컨대, 한 대의 슈퍼컴퓨터에 10페타를 탑재하는 것보다, 1페타 슈퍼컴퓨터를 10대 만들어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연구자가 있는 곳에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없는가? 10페타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목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미국이 2012년까지 10페타 슈퍼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령 일시적으로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세계 최고속이 된다고 한들 언제까지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 '과학'에 비용 대비 효과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되나, 1천억엔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슈퍼컴퓨터 개발비와 유지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슈퍼컴퓨터 K의 개발에 여타의 슈퍼컴퓨터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든 것은, 슈퍼컴퓨터 K의 경우 프로세서를 독자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슈퍼컴퓨터 K 개발을 위해 후지쯔는 SPARC라는 프로세서를 개발하였으나, 이 프로세서는 일본의 일부 컴퓨터에만 사용되었을 뿐 확산되지 못해 많은 투자에 비해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11) 슈퍼컴퓨터 K 개발에 관한 평가에는 본고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많은 지적사항 가운데서도 특히 "세계 1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2위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은 슈퍼컴퓨터 K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을 대표하는 문구가 되었다.

슈퍼컴퓨터 K 개발 사례는 전문가들도 기초연구 달성 시 기대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과학기술의 필요성, 중요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세계 1등을 목표로 하는 시대는 아니다. 세계 1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2위는 안 되는가?

사업분류 결과,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동결하여야 하며, 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12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폐지'가 1인, '예산 책정하지 않음'이 6명, '예산요구액 삭감'이 5명이었다. 그 결과 예산에 대한 검토와 관계부처 장관의 절충 등을 거쳐, 2010년에는 문부과학성의 268억엔 요구액에 대해 110억엔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슈퍼컴퓨터 K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산사업 평가의 입장에서는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당연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사업담당자는 이러한 질문에 적절히 응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지적에 대해 담당부서인 문부과학성은,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아니면 최첨단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세계 최고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신을 하였다. 문부과학성의 답신은 감성적인 것이며 평가위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권고됨에 따라 과학계에서는 크게 반박하였다. 특히 일본의 과학계를 대표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발언을 보면 먼저, 당시 이학연구소 이사장이었던 노요리 료지(野依良治)[12]는 "선진 각국이 국가의 위신을 걸고 슈퍼컴퓨터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동결되면 다른 나라에 뒤쳐진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이나 교육은 단기적인 비용 대비 효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좀 더 견식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슈퍼컴퓨터나 가속기는 인프라이므로 국가 입장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에자키 레오나(江崎玲於奈)[13]는 "일본의 과학기술은 일류가 아니다. 이럴 때 지출을 하지 않으면 더욱 나빠질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고, 도네가와 스스무(利根川進)[14]는 "세계 1등을 목표로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1등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2등도 3등도 할 수 없다"며 세계 1위를 지향한다는 슈퍼컴퓨터 K 개발사업을 지원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을 주도한 문부과학성, 실제로 개발

12) 200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13) 197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14) 1978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수상자

을 담당한 이학연구소, 그리고 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노벨 수상자들마저도 슈퍼컴퓨터의 개발에 대한 합리성,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과학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정도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도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구가 달성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많은 경우에 설령 그것이 사후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더라도, 사전적으로는 전문가들도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슈퍼컴퓨터 K와 관련하여, 2013년 이미 속도에서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 이학연구소에서는 "속도는 3위이나, 사용의 편리함과 관계가 있는 CPU-메모리 간, CPU 간 데이터 전송 성능은 다른 슈퍼컴퓨터보다도 우위에 있어, 말하자면 사용의 관리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세계 1위 속도여야 한다고 개발 시 주장하였던 논리는 이미 없어지고,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사용의 편리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당초의 주장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2015년 행정사업 리뷰에서 가동된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슈퍼컴퓨터 K에 대한 후속 성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행정사업 리뷰에서는, 개발비로 1,100억엔 이상이 들었으며, 운용에 매년 100억엔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슈퍼컴퓨터 K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 1,200억엔의 국비를 투입하여 슈퍼컴퓨터 K 이후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15)]

하지만 이학연구소와 후지쯔는 2020년 속도와 기타 성능에서도 모두 이전의 슈퍼컴퓨터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컴퓨터 후가쿠(Fugaku)를 개발하였다. 후가쿠의 개발에 슈퍼컴퓨터 K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향후 후가쿠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여 과학기술 및 일상생활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현재는 예단할 수 없으나, 컴퓨터 개발에 관한 한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기초연구의 결과는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마저도 평가하기 어렵다.

15) 2015년에 이미 이학연구소와 후지쯔는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세계 1위를 자리를 차지한 후가쿠가 그 결과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이론의 개발이 장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사전적은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Ⅳ. 결론: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연구의 결과는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마저도 평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초연구의 결과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나, 기초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은 물론이거니와 연구가 완성된 이후에도 평가하기 어렵다.

예컨대, 현재 모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GPS 기술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이용하여 시간을 보정해야 한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하였을 때 그 이론이 GPS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이론의 개발이 장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사전적은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기초연구의 성과를 단기간 내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울러 결과 자체에 대한 정의도 어려우며 측정도 매우 어려우므로 성과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과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에 맞추어 사업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근거한 사업의 관리는 성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고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성과 자체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측정 또한 어려운 사업에 대해 성과에 따른 지원을 엄격하게 실시한다면, 그 사업은 사업 본연의 성과가 아니라 달성하기 쉬운 형태의 결과를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로 설정할 것이다.

연구개발, 특히 기초연구 개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기초연구 개발사업에 대해 엄격히 성과에 근거하여 지원하게 되면, 즉 인센티브 구조가 단기간의 업적을 중시하는 형태가 되면, 기초연구 개발은 당연히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지향하게 될 것인데, 이는 연구개발이 원래 추구하는 목표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원칙 없이 지원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엄격한 성과주의의 도입은 왜곡된 유인구조로 인해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서론의 대통령 발언에 있듯이, 성과는 좋으나 많은 결과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왜곡된 유인체계에 의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기초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인체계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초연구의 결과는 단기에 나타나지 않고, 장기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초연구에 관한 개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성과평가는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약속된 지원을 하되, 기초연구 개발비 총액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예산당국은 예산 혹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로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비 총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예컨대, 3년이나 5년)을 정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측정하며 성과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설정된 총액을 개별 사업에 배분하는 것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예컨대, 과학기술정통부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또는 연구재단 등)이 과학계의 수요, 필요성, 가능성 등 전문가적 식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방식 및 평가방식을 이와 같이 할 경우, 기초연구가 1년이라는 단기적인 시간에 쫓기어 1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만을 수행하는 단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기초연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단기적인 성과를 묻지 않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일정 비용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성과에 대한 점검이 없는 만큼 원래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예산이 유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연구의 선정은 전문가 집단의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데, 과연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비도덕적 예산의 사용을 검증하고,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적절하지 못한 사업 선정의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 선정이 예산 당

기초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단기적 관점의 성과평가는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약속된 지원을 하되, 기초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 개선방안은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평가제도의 미조정이 아닌 기초연구가 가지는 속성에 근거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전문가 단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만큼 적절하지 못한 연구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부도 성과평가 방안을 계속하여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선방안은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연구개발, 특히 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평가제도의 미조정이 아니라 기초연구가 가지는 속성에 근거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분석(총괄)』, 2019.

원종학, 「일본의 사업분류와 예산삭감」, 『재정포럼』 제169호, 2010. 7., pp. 6~19.

임길환, 『국가R&D정책평가-지원체계 및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사업평가 15-10, 국회예산정책처, 2015.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상』, 2018, http://gonggam.korea.kr/fcatalog/ecatalog.jsp?Dir=1600&catimage=&callmode=admin, 검색일자: 2020. 8. 23.

한웅용·김주일, 『2020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0.

OECD, *Frascati Mannual*, 2002.

経済産業省,「我が国の産業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活動の動向ー主要指標と調査データ」, 2019,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gijutsu_kakushin/tech_research/aohon2019.pdf.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검색일자: 2020. 8. 20.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0. 8. 20.

Wikipedia(Japan), https://ja.wikipedia.org/wiki/京_(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 검색일자: 2020. 8. 10.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_computer, 검색일자: 2020. 8. 10.

OECD Data,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https://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 검색일자: 2020. 8. 10.

OECD Stat,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http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STI_PUB, 검색일자: 2020. 8. 20.

Top500 The List, https://top500.org, 검색일자: 2020. 8. 25.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1)]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choi@kipf.re.kr)

Ⅰ. 들어가며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주인공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조 바이든(J. Biden). 선거는 치열했다. 당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었지만,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숨어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표마감 직후 사흘이 지나도록 당선인이 확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우편투표 결과가 합산되기 시작하자 전세는 바이든 쪽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선 나흘만인 11월 7일(현지시간 기준) 바이든이 당선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한 가운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백악관 입성을 앞두게 되었다.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28년 만에 부통령 출신 대통령이 되었지만, 바이든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폭넓고 복잡해 보인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드러난, 극심하게 좌우로 갈라진 미국의 정치적 지형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후보였으되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중도주의자 내지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 그가 여야로 대변되는 진보·보수 양쪽의 정치적 요구를 모두 만족스럽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의 복원 과제 역시 그 해결책 모색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구조 속에서 코로나19발(發) 장기 실업 및 기업 파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새롭게 들어설 행정부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미국 내 정치·경제적 현안들 외에도, 중국, 북한 등과의 외교·안보 문제,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범지구적 환경 문제 등 바이든을 기다리고 있는 국내외 문제들은 산적해 있어

1) 본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및 편집위원분들, 원내 토론을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의 취합·정리를 위해 애써주신 김현숙 선임연구원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기 4년이 무척이나 짧아 보이는 형국이다.

막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바이든이 들고 나온 정책들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선거전 당시 그가 외친 구호는 "Build Back Better"(BBB)로, 번역하자면 "발전적 재건"이다. 마치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듯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미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그가 밝히고 있는 BBB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부(富)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자는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바이든 캠프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록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어려워지면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초반부터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반 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고 있는 정치·경제적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요긴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 정책에 대하여 차분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Ⅱ장에서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현 좌표를 짚어본다. 뒤이어 제Ⅲ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을,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예상 세입·세출 규모와 함께, 소개·정리한다. 한편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분배·재정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제Ⅳ장에서 집중 조명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바이든 조세·재정 정책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및 시사점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1. 정치 상황: 대선결과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3일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지형도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지지정당 양극화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카운티(county)별 인구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지형도는 "지지정당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카운티 내 고학력 백인 비율과 양당 간 득표율 격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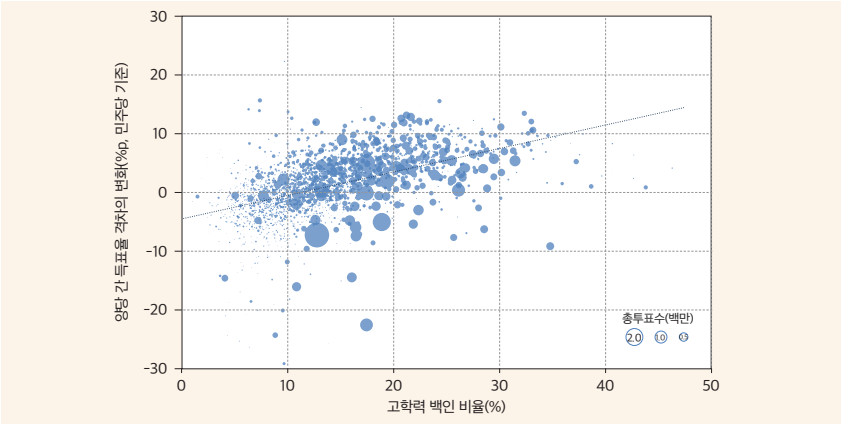

주: 각 원은 카운티에 대응되며 그 크기는 2020년 대선에서의 총투표수에 비례함
출처: Decision Desk HQ; The New York Times; MIT Election Lab; Census Bureau

[그림 2] 카운티 내 히스패닉 비율과 양당 간 득표율 격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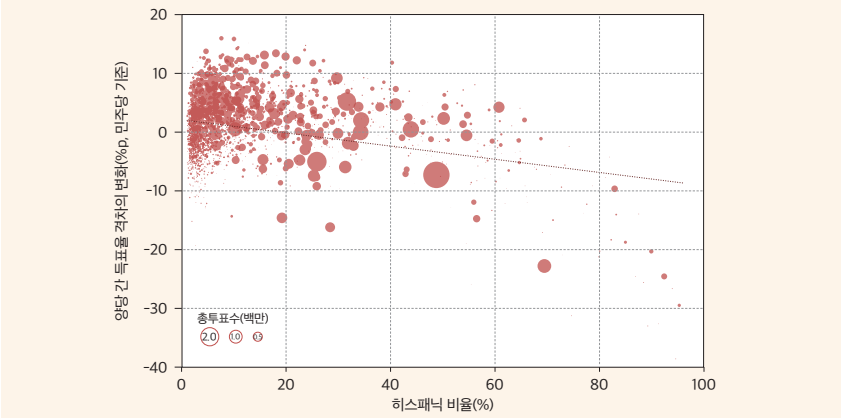

주: 각 원은 카운티에 대응되며 그 크기는 2020년 대선에서의 총투표수에 비례함
출처: Decision Desk HQ; The New York Times; MIT Election Lab; Census Bureau

구성에 따른 민주·공화당 간 득표율 격차의 변화를 최근 두 차례의 대선을 통해 살펴보면, 2020년 대선에서 고학력 백인 비율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민주당 지지와, 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공화당 지지가, 2016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이는 인종과 교육수준에 따른 지지정당 공고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대선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붉은 미국은 더욱 붉게, 파란 미국은 더욱 파랗게 되

고 있다(Red America is growing more red and blue America more blue)"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의 표출로 진단하는 한편, 문제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해소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 분열 극복이라는 과제의 해결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에게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카운티별 인구 구성에 따른 민주·공화당 간 득표율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종과 교육수준에 따른 지지정당 공고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 상황: 코로나19 여파를 중심으로

미국의 2020년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의 급격한 침체, 이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회복,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여파와 불확실성의 공존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처음 보고된 것은 올해 1월 22일(현지시간 기준)이다. 이후 2월 말까지 별다른 확산세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3월 초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3월 13일 국가적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미국 전역에 봉쇄 조치가 내려지기에 이른다. 공공기관, 학교, 상점 등이 봉쇄 조치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경제적 영향은 상당했는데, 2020년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

[그림 3] 미국의 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2016년 1분기~2020년 3분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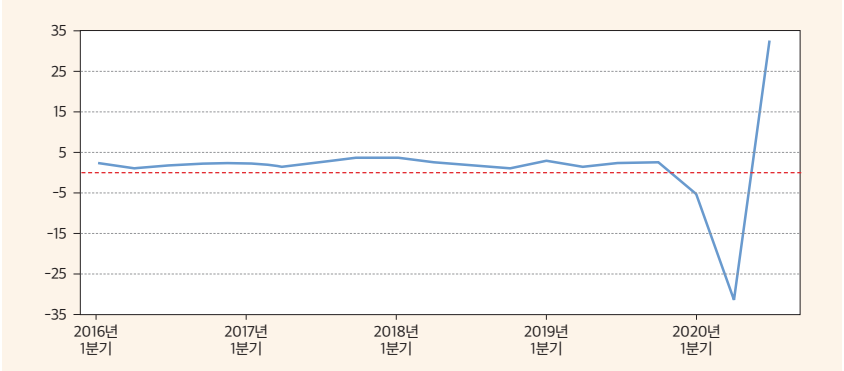

주: 계절조정 연환산치임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의 2020년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의 급격한 침체, 이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회복,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여파와 불확실성의 공존으로 요약된다.

너스로 돌아서게 된다([그림 3] 참조). 봉쇄령이 5월 중순까지 지속됨에 따라 미국의 경제지표는 더욱 악화되는데, 2020년 4월 미국의 실업률은 14.7%까지 치솟게 되고 영업 중인 사업자의 수는 동년 1월 대비 20% 이상 급감하게 된다(Fairlie, 2020). 이에 따라 미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31.4%로 집계,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1947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그림 4] 미국의 베버리지(Beveridge) 곡선(2001년 1월~2020년 9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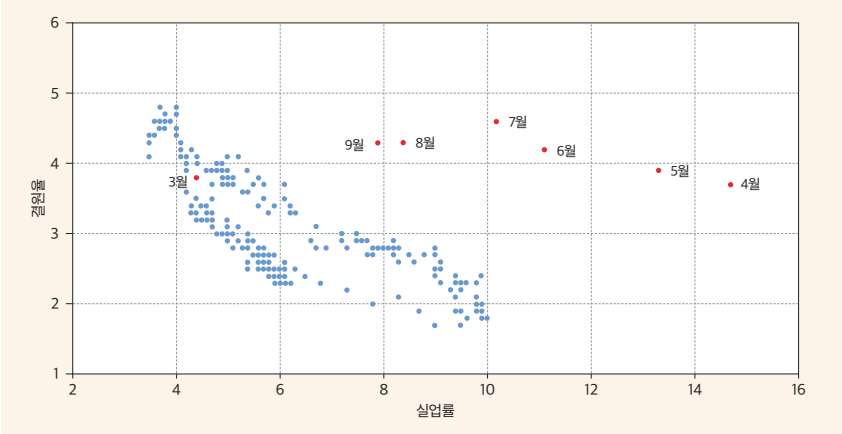

주: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실업률·결원율 조합은 붉은색 점들로 표현되어 있음. 2020년 9월 결원율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임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 5] 미국 내 영업 중인 사업자의 수(2020년 1~9월)

(단위: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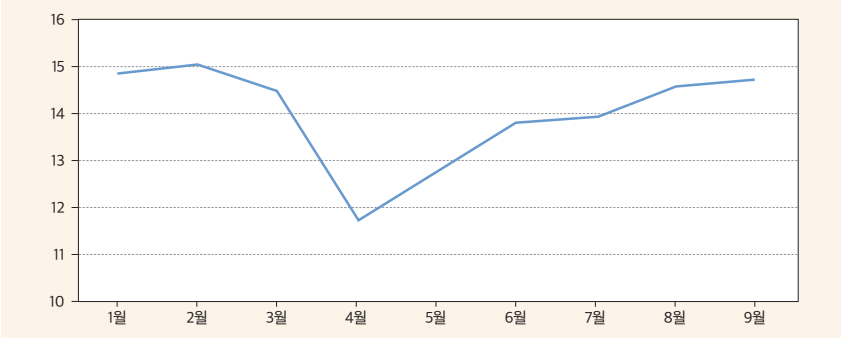

출처: 상반기 추정치는 Fairlie(2020)의 <표 1>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 3분기 추정치는 Fairlie의 개인 홈페이지 (https://people.ucsc.edu/~rfairlie/current, 최종 검색일자: 2020. 12. 6.)에 추가로 게시된 자료를 활용

[그림 6] 미국과 주요국의 2020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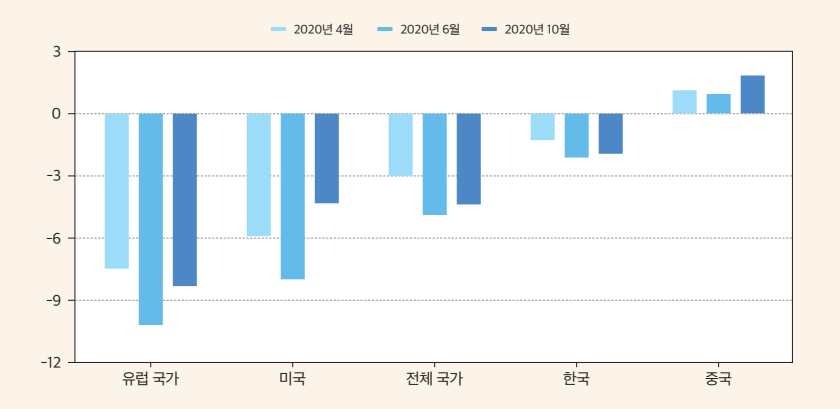

주: 옅은 푸른색은 2020년 4월, 중간 푸른색은 6월, 짙은 푸른색은 10월 전망치에 각각 해당됨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하지만 봉쇄 해제 이후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우선 실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9월에는 7.9%를 기록,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이 감지되었다([그림 4][2] 참조). 영업 중인 사업자의 수도 3분기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9월에는 동년 1월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역시 33.1% 증가하였는데, 최근 IMF는 이와 같은 경제지표 개선을 반영하여 지난 4월 -5.9%로 전망하였던 미국의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을 -4.3%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같은 기간 -7.5%에서 -8.3%로 하향 조정된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그림 6] 참조), 미국의 경기회복이 기존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기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와 전망치들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경제적 회복력에 이질성이 목격됨에 따라 유의가 필요하다. 가령 연소득이 6만달러를 초과하는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11월 현재 연초의 고용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반면, 연소득 2.7만달러 미만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그 고용수준이 여전히 동년 1월 대비 2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etty et al., 2020; [그림 7] 참조).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장기간 집중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경제지표 해석 시 간과되지 말아야

고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수준 회복이 더딘 점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장기간 집중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 [그림 4]에 제시된 베버리지(Beveridge) 곡선은 실업률과 결원률(vacancy rate)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로,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그림 내 푸른색 점들에 해당)를 지닌다. 그러나 2020년 4월 실업률·결원률 조합은 기존 곡선으로부터 크게 이탈되어 있으며, 이후 집계된 실업률·결원률 조합들은 기존 곡선으로의 복귀 움직임(그림 내 붉은색 점들에 해당)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이면 연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GDP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재정 확대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할 부분이다. 한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향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미 의회예산처)는 불과 1년 전 올해 연방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그 예측치를 98%로 수정하였다([그림 8] 참조). 이에 따라 내년이면 연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GDP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재정 확대 여력을

[그림 7] 임금수준별 2020년 1월 대비 고용수준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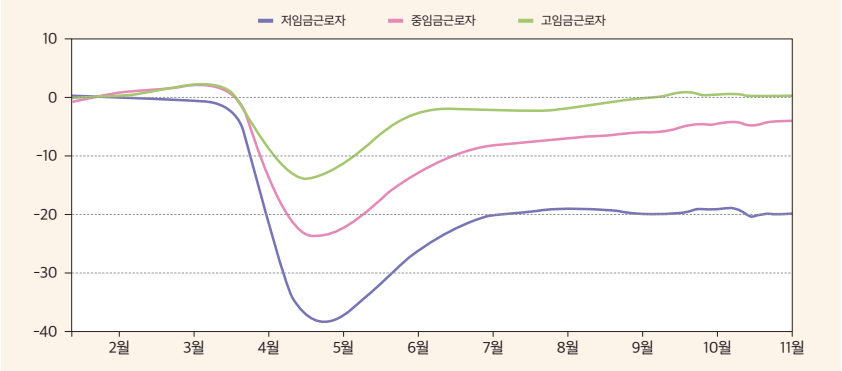

주: 임금수준이 연 2.7만달러 미만인 경우 저임금근로자, 2.7만달러 이상 6만달러 이하인 경우 중임금근로자, 6만달러 초과인 경우 고임금근로자로 분류됨. 계절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출처: Opportunity Insights

[그림 8]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 추이 및 전망(1900~2050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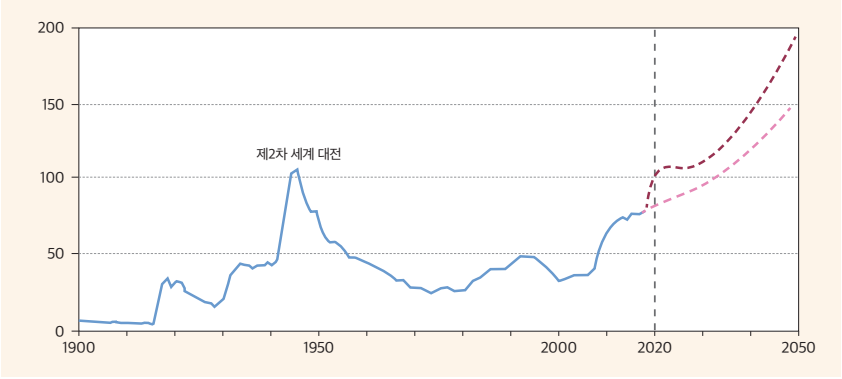

주: 옅은 붉은색은 2019년 전망치, 짙은 붉은색은 2020년 전망치에 해당됨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그림 9]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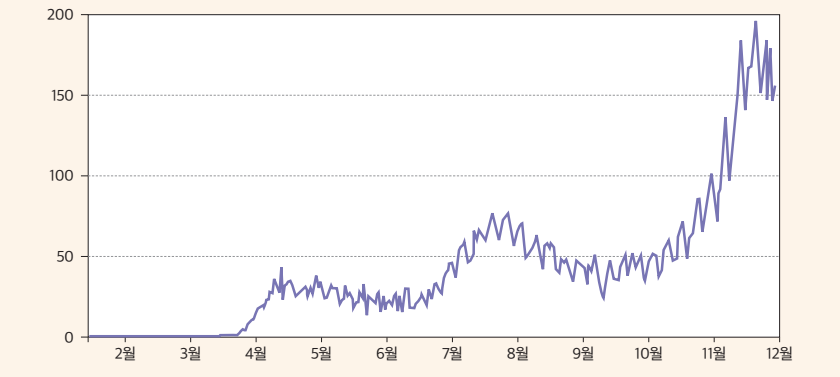

주: 2020년 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일별 신규 확진자 수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잔존은 미국의 경제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최근 백신 보급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의 희망이 일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의 백신 확보와 공급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난관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11월 이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그림 9] 참조), 이는 미국의 경제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라 하겠다.

Ⅲ. 바이든의 공약: 조세·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이 제시한 방안들을 점검해볼 차례이다. 주지의 사실이듯, 바이든은 델라웨어주(州) 상원의원(36년)과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8년)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흔히 중도주의자 혹은 실용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이력과 성향을 반영하듯, 새로운 행정부는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하되, 전반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바이든 캠프에 참여한 인물들 중에는 오바마 행정부 출신 참모진들이 꽤 포함되어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 고문을 맡았던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하였던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라 할 수 있다.

자레드 번스타인(J. Bernstein)이 대표적이다. 공정한 성장을 위한 워싱턴 센터(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의 대표 헤더 부쉐이(H. Boushey)와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Kellogg School of Management at Northwestern University)의 교수 벤 해리스(B. Harris) 등도 바이든 캠프에 가담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도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인사들이다. 이러한 까닭에 바이든 캠프가 선거에서 내세운 경제정책들 역시 전체적으로 중도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조세 및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3)]

1. 조세정책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하였던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라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미국 내 투자 증대 등을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감세정책인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를 관철시킨 바 있다. 바이든은 이러한 세제개편의 혜택이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표 1> 미국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추이(2011~2020년)

(단위: %)

연도	법인세율	소득세율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2011	35.0	10.0	15.0	25.0	28.0	33.0	35.0	-
2012	35.0	10.0	15.0	25.0	28.0	33.0	35.0	-
2013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4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5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6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7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8	21.0	10.0	12.0	22.0	24.0	32.0	35.0	37.0
2019	21.0	10.0	12.0	22.0	24.0	32.0	35.0	37.0
2020	21.0	10.0	12.0	22.0	24.0	32.0	35.0	37.0

주: 소득구간 기준은 매년 갱신되어 왔으며, 구체적은 값들은 아래 출처에 제시된 자료들에서 확인 가능함
출처: OECD Tax Database; Internal Revenue Service

3) 바이든 캠프의 통상, 환경, 이민 정책 등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강구상 외(2020)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캠프의 조세정책 공약을 살펴보면,[4] 우선 법인세율 인상이 눈에 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법인세율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기존 35%에서 21%로 인하된 바 있다(<표 1> 참조). 이는 37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과 비교했을 때 2.5%p 낮은 수준(2020년 기준)으로,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7%p 높은 28%로 인상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바이든 캠프는 연매출 1억달러 이상 법인의 회계이익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tax,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의 세율(10.5%) 두 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TCJA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뚜렷하게 목격된다. 우선 2017년 발효된 TCJA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아졌던 소득세 최고세율(37%)이 바이든 집권 시 기존 39.6%로 회복될 전망이다(<표 2> 참조). 또한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의 최대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5]에 대한 세제혜택도 일정 소득기준(40만달러)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6] 나아가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20%에서 39.6%로 상향 조정됨은 물론, 연소득 40만달러 초과 시 항목별 공제의 한도가 28%로 제한될 전망이다.

법인세, 소득세 등에 이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 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향후 40만달러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도 현행 12.4%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세제를 도입·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하였던 일련의 감세정책들을 철폐하되, 그 대상은 담세력에 비해 실질부담률이 현저히 낮다고 여겨지는 법인 혹은 개인 고소득자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세제개편안의 골자이다.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만일 이러한 바이든의 세제개편안이 (2021년 취임 직후 즉각적으로 발효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증가시킬 수 있는 세수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3.8조~4.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표 2> 참조). 이는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 시 1.4~1.6%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 바이든 캠프가 제시한 세수 목표와 유사한 수준이다. 예상되는 세수 증가의 견인차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들을 철폐하되, 그 대상은 담세력에 비해 실질부담률이 낮다고 여겨지는 법인 혹은 개인 고소득자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세제개편안의 골자이다.

4) 이하의 바이든 캠프 조세정책 관련 논의는 CRFB(July 30, 2020)의 "Understanding Joe Biden's 2020 Tax Plan"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5)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 동업기업(partnerships), S-법인(S-corporations) 등이 해당된다.
6) 소득수준이 4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존 TCJA에 따라 2025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의 세제개편으로 증가하게 될 세수의 규모는 이전 세제개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편에 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표 2> 바이든의 조세정책 공약 및 예상 세수입(2021~2030년)

(단위: 십억달러)

분류 및 내용		TPC	PWBM	TF	AEI
법인세	법인세율 인상(21%→28%)	1,300	1,088	1,306	1,297
	법인 회계이익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166	227	318	160
	GILTI 세율 인상(10.5%→21%)	309	323	303	310
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143	153	151	100
	패스스루 기업의 공제혜택 단계적 폐지	219	208	197	212
	자본이득세율 인상(20%→39.6%)	448	382	503	379
	항목별 공제의 한도 28%로 제한	376	263	357	312
사회보장세: 40만달러 이상 임금에 12.4% 적용		962	1,035	808	797
기타		120	117	130	185
합계 (GDP 대비 %)		4,043 (1.55)	3,796 (1.46)	4,073 (1.56)	3,752 (1.44)

주: TPC는 Tax Policy Center(조세정책센터), PWBM은 Penn Wharton Budget Model(펜와튼예산모델), TF는 Tax Foundation(조세재단), AEI는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미국기업연구소)를 각각 의미함. 기타에 포함된 세부항목들의 목록은 아래 출처에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함

출처: CRFB(July 30, 2020)의 "Understanding Joe Biden's 2020 Tax Plan"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세율 증가가 예고된 법인세가 맡을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성 가능한 추가 세수의 규모는 1.1조~1.3조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예상 세수 증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회보장세의 기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전체 세수 증가액의 최소 20%는 고소득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추가 적용에 기반할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내다봤다.

흥미롭게도 바이든의 세제개편으로 증가하게 될 세수의 규모는 이전 세제개편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편에 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당파적 연구기관인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책임 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조성 가능한 세수의 양이 향후 10년간 4.3조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며, 이는 GDP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10] 참조). 하지만 CRFB는 이와 같은 예상이 바이든 캠프의 공약에 포함된 모든 세제개편안들이 동시에 통과·발효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역사적 수준의 세수 증가를 실제로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 10] 바이든 조세정책과 이전 조세정책들과의 비교: (예상) 세수입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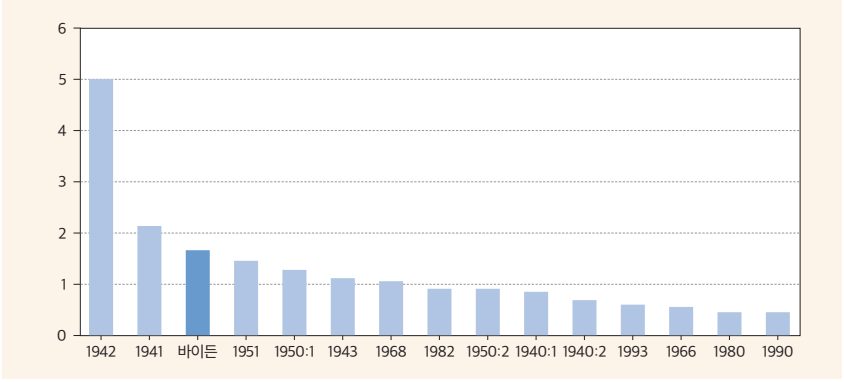

주: 1950:1과 1950:2는 「Revenue Act of 1950」과 「Excess Profits Tax of 1950」에, 1940:1과 1940:2는 「Revenue Act of 1940」과 「Second Revenue Act of 1940」에 각각 해당됨. 1968년 이전의 법안들은 1년간, 1968년과 1977년 사이의 법안들은 2년간, 1977년 이후의 법안들은 4년간, 바이든 조세정책은 10년간 평균 (예상) 세수입을 추정한 수치임

출처: Tempalski(2013)와 CRFB(October 21, 2020)의 "Factchecking Tax Claims in the 2020 Election"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바이든은 "발전적 재건" 공약의 이행을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 재정정책

이제 바이든의 조세정책에 이어 그 짝패라 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대하여 논의할 차례이다.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BBB 공약의 "재건" 부분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BBB 공약의 "발전적" 부분의 이행 역시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선거운동 당시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예산을 친환경 기술 및 혁신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집중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신기술 중심의 산업 재편 속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미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촉진·지원하여 BBB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미국의 발전적 재건을 위한 바이든 캠프의 재정지출 계획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7] 무엇보다도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출계획이 눈에 들어온다(<표 3> 참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정지출 관련 공약이 즉각적으로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7) 이하의 논의는 필자가 CRFB (October 7, 2020)의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을 바탕으로 바이든의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계획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바이든 캠프에서 제시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재정지출 방안들은 제외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바이든 캠프의 재정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기반시설·환경·복지 분야에 향후 10년간 4.45조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3> 바이든의 재정정책 공약 및 예상 지출규모(2021~2030년)

(단위: 십억달러)

분류 및 내용	저위	중위	고위
보육 및 교육	-2,400	-2,700	-3,050
영유아 보육 지원	-300	-500	-750
초중등 교육 지원	-600	-600	-600
고등 교육 지원	-1,500	-1,600	-1,700
보건 및 의료	-1,000	-2,050	-2,400
건강보험 범위 확대	-1,700	-1,900	-2,100
고령인구 보건·의료 지원	-600	-600	-650
기타 보건·의료 지출	-300	-300	-300
보건·의료비용 현실화	1,300	450	350
보건·의료지출 효율화	300	300	300
사회보장	-950	-1,150	-1,300
사회보장 확대	-400	-400	-400
보족적(補足的) 소득보장 확대	-550	-700	-800
고령인구 세제혜택	0	-50	-100
기반시설·환경·복지	-3,000	-4,450	-5,500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	-2,000	-3,000	-4,000
주거 지원	-350	-750	-750
유급 휴직 지원	-550	-550	-550
기타 복지 지출	-100	-150	-200
안보 및 이민	950	750	700
종전(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750	550	500
이민정책 완화	200	200	200
합계	-6,400	-9,600	-11,550

주: 예상되는 지출의 증가는 음수(-), 감소는 양수(+)로 표현되어 있음. 저위, 중위, 고위 각각의 경우를 위한 가정 및 산출방식 등은 아래 출처에 제시된 자료를 참조할 것

출처: CRFB(October 7, 2020)의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10년간 영유아 보육,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각각에 0.5조, 0.6조, 1.6조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중위가정 기준)으로, 총 2.7조달러 규모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출은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액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및 의료 분야 지출 확대도 두드러지는데,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범위 확대나 고령인구 보건·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액은 2.0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과 기반시설·환경·복지 분야에도 큰 폭의 예산 증가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각각 1.15조달러 및 4.4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8] 반면 안보 및 이민 분야에서

8) 단, 기반시설·환경·복지 분야에 배정 예정인 4.45조달러 중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출될 3조달러는 장기적 지출이 아닌 일시적 지출에 해당될 것으로 CRFB는 전망했다.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바이든 선거캠프 홈페이지(https://joebiden.com/climate-plan 혹은 https://joebiden.com/clean-energy, 최종검색일자: 2020. 12. 6.)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4>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약으로 인한 예상 세입·세출 변화 비교

(단위: 십억달러)

항목	바이든	트럼프
보육 및 교육	-2,700	-150
보건 및 의료	-2,050	150
사회보장	-1,150	-
기반시설·환경·복지	-4,450	-2,700
안보 및 이민	750	-300
조세정책	4,300	-1,700
이자비용	-300	-250
합계	-5,600	-4,950

주: 표에 제시된 금액은 향후 10년간(2021~2030년) 예상되는 세입·세출의 변화규모로 세입의 증가나 세출의 감소는 양수(+), 세입의 감소나 세출의 증가는 음수(-)로 표현되어 있음

출처: CRFB(October 7, 2020)의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필요한 추가예산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9.6조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온전히 실행될 경우 최근 수십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정부지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는,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의 종전 추진, 이민정책 완화를 통한 추가세수 확보 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0.75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산이다.

요약하자면,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예산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9.6조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시하였던 재정지출 확대 폭인 3조달러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표 4> 참조), 두 후보 진영 간의 온도차를 여실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민주당 경선 당시 바이든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다른 경쟁 후보들에 비하면 매우 보수적인 편이었다. 당내 주요 경쟁 후보였던 샌더스(B. Sanders)와 워런(E. Warren)이 제시한 정부지출 계획은 GDP의 15% 수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그림 1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정부지출 계획안은 이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오바마(B. Obama), 클린턴(B. Clinton) 등의 계획안과 비교해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소속 PWBM(Penn Wharton Budget Model, 펜와튼예산모델)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바이든 캠프의 계획은 최근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정부지출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보다 적절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고소득자 중심의 대규모 증세 역시 바이든 캠프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바이든 조세정책의 예상 세수(4.3조달러)를 반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최대 수준의 세입 증가가 동반되는 최대 수준의 세출 확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효과성 내지 적절성의 문제는 경제 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그림 11] 바이든과 타 후보들의 재정정책 비교: 예상 지출규모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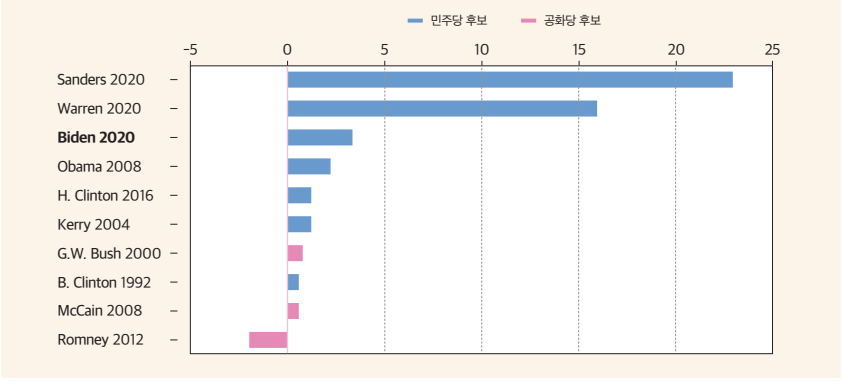

주: 연환산 평균 추정치임

출처: The Economist(October 3, 2020)의 "Joe Biden would not remake America's economy"에서 발췌

영하여 순지출의 규모를 따져보면 5.6조달러(예상 이자비용 0.3조달러 포함)로 추산되는데, 이는 1.7조달러의 감세를 약속한 트럼프의 예상 순지출액 4.95조달러와 비교하여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표 4> 참조). 결국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최대 수준의 세입 증가가 동반되는 최대 수준의 세출 확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효과성 내지 적절성의 문제는 경제 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하겠다.

Ⅳ. 바이든 공약의 경제적 영향 전망

대규모 세입·세출 증대 계획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이든의 공약은 과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성장·분배·재정적 측면에서 제시한다.[9] 이하에서 상술하겠지만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의 공약 이행으로 분배적 측면에서의 지표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개선에는 재정수지 악화라는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연구결과들은 말하고 있다.

9)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 별로 분석의 방법이 상이한 까닭에 이하에서 제시되는 성장·분배·재정적 측면의 영향은 동일한 경제적 모형 및 가정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특히 성장·분배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전망들은 대부분 바이든이 제시한 재정정책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들로서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하다.

1. 성장적 측면

우선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바이든의 조세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과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는 투자나 노동공급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기관들은 그 크기가 기준점 GDP(바이든의 조세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산되는 GDP)의 0.2~1.6%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그림 12] 참조).[10] 반면, 재정정책의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바이든의 공약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령 PWBM은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이 0.8%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역시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바이든 집권 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2.6%의 GDP 성장이 예상되어 비교점인 2.4%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림 12] 바이든 공약의 경제적 영향 전망: GDP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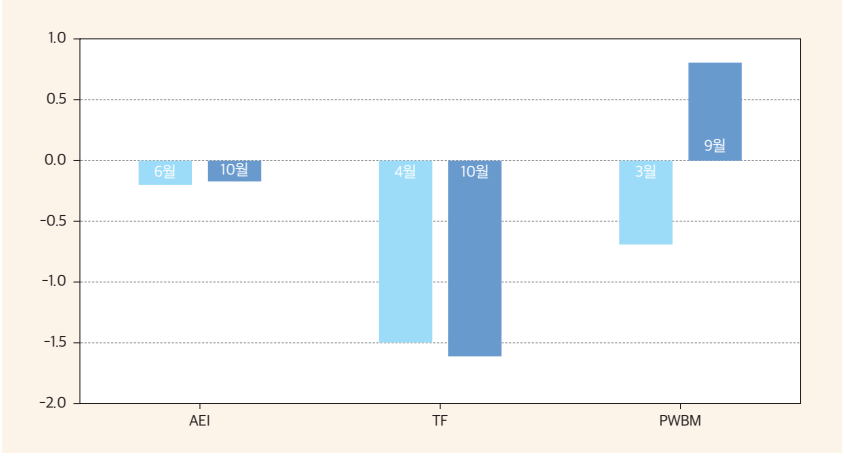

주: 보고된 수치는 바이든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예상되는 기준점 대비 GDP의 장기 변동률임. 각 연구기관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공약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측치를 갱신하였으며, 그림에 제시된 월 정보는 각 연구기관이 (갱신된) 예측치를 발표한 시점에 해당됨. AEI와 TF는 분석 시 재정정책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PWBM의 경우 9월 예측치에만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음

출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ax Foundation, Penn Wharton Budget Model

10) 특히 최저 예상치인 0.2%는 공화당계 연구기관으로 분류되는 AEI에서 제시한 것이라 더욱 흥미롭다.

바이든의 계획이 온전히 실행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조세제도는 더욱 누진적인 구조로 변형될 것이며, 그에 따라 분배적 측면에서의 지표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분배적 측면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일 바이든의 세제개편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발효될 경우, 미국의 조세제도는 더욱 누진적인 구조로 변형될 것이다. 보다 누진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미국의 소득분배지표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지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상되는 소득분위별 세후소득의 변화 추정을 통해 조세 누진성 강화의 분배적 효과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 방식에 의한 분석결과는 [그림 13]에 제시되어 있는데, 바이든의 계획이 온전히 실행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조세정책은 최상위 소득 집단의 세후소득은 감소시키되 하위 소득 집단의 세후소득은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위 1% 소득 집단의 경우 11.3~15.6% 수준의 세후소득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하위 20% 소득 집단의 경우 5.2~10.8% 수준의 세후소득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11] 흥미롭게도 이러한 분석결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계획된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세제개편 과정 속에서 현재 극심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일정 수준 개선될 여지를 내비친다 하겠다.

[그림 13] 바이든 공약의 경제적 영향 전망: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변화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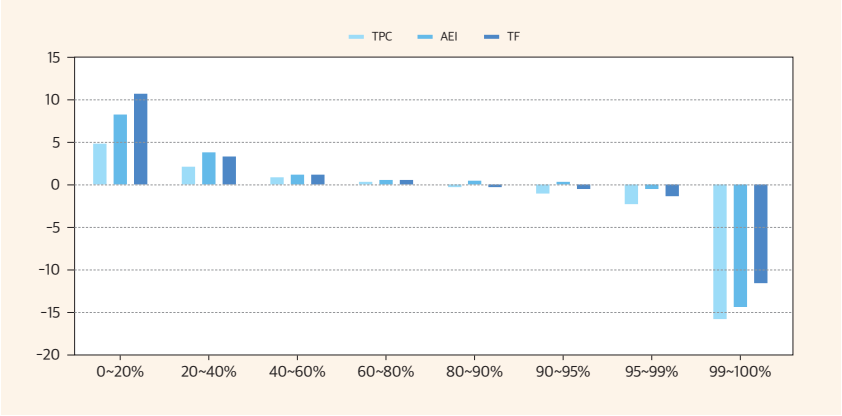

주: 보고된 수치는 바이든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예상되는 소득분위별 기준점 대비 세후소득의 변화율임(단, TPC는 2022년, AEI와 TF는 2021년 세후소득을 분석함). 세 연구기관 모두 재정정책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하위 80%에 대한 AEI의 추정치는 저자가 원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임

출처: Tax Policy Cente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ax Foundation

11) 본문에서 언급되는 세후소득의 변화는 조세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영향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야기되는 귀착효과 등의 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다.

3. 재정적 측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든 조세·재정 정책의 재정적 영향에 대하여 논의할 차례이다. CBO에 따르면, 2019년 말 GDP 대비 79% 수준이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액은 2020년 말을 기점으로 GDP의 98%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어 2023년에는 그 규모가 역사상 최대 수준인 107%에 이르고,[12] 10년 후인 2030년에는 109%에 도달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우려스럽게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정부의 부채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RFB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들이 취임 직후 즉시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GDP 대비 부채 수준은 2030년 12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참조). 이는 기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재정적자 13조달러에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5.6조달러가 더해진 결과로, CRFB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정부부채 규모에 있어 역사적 신기록 달성을 향해 달려가는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13]

따라서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더라도 저금리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당국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함에 따라,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유예를 통해 연방정부의

바이든의 집권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부채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12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14] 바이든 행정부의 누적 재정적자 규모 예상 추이(2021~2030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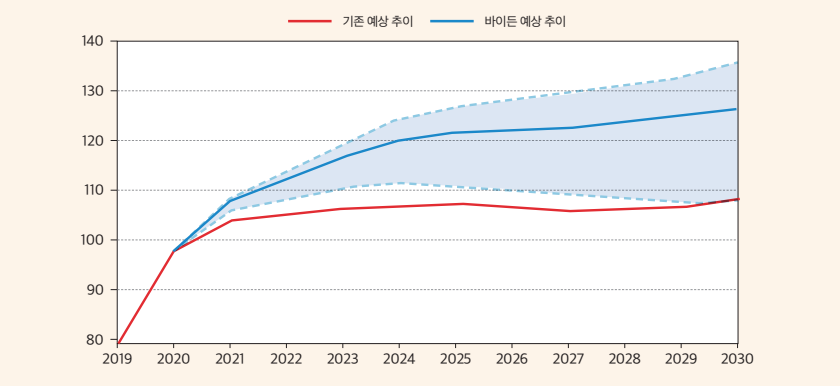

주: 붉은색 실선은 2020년 9월 CBO가 발표한 연방정부 부채규모의 예상 추이임. 푸른색 실선은 바이든 집권기간 동안 예상되는 부채규모의 추이로, 푸른색 음영 부분은 저위 및 고위 가정에 따른 예상 추이의 가능 범위를 나타냄

출처: CRFB(October 7, 2020)의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에서 발췌

12)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부부채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에 기록된 106%이다.

13) 다만 CRFB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도 2030년 정부부채의 규모는 GDP 대비 1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두 후보 모두 재정건전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은 채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을 설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이 본모습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월한 자금조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금리와 재정 확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해질 것임을 감안할 때, 통화당국과 연방정부 모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마치며: 실현 가능성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바이든은 법인 및 개인 고소득자 중심의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망 확대 및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발전적 재건"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하에서는 바이든이 내세운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우선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이 본모습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12월 6일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확보한 상원 의석 수는 각각 48석(연계 무소속 2석 포함)과 50석인데, 남은 2석의 주인이 결정될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州)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전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권과 입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원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바이드노믹스의 추진력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분위기다. 물론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공화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 경기부양법안 통과(2009년) 및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2011년) 등을 주도하며 그 협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M. McConnell) 공화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상원의 견제 속에서 다시 한 번 중도적 협상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제Ⅳ장에서 지적되었듯 연방정부의 부채 수준이 바이든의 집권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만성화된 지 오래며,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인식도 변화([그림 15] 참조),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럽게도 이

[그림 15] 재정적자 감축의 정책적 우선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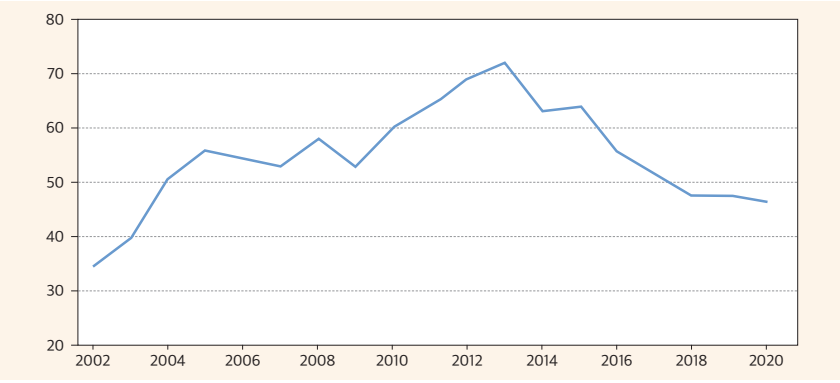

주: 보고된 수치는 재정적자 감축이 대통령과 의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답한 연도별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비율임. 모든 연도의 설문조사는 해당 연도 1월에 실시되었음(단, 2020년의 경우 6월 설문조사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

연방정부의 부채 수준이 바이든의 집권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는 정책 입안자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수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될 필요가 있다. 최근 CRFB의 위원장 마야 맥기네스(M. MacGuineas)가 경고하였듯, 지속적인 상환 유예와 무차별적인 차입의 결과 현재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14] 나아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라 할지라도, 예산 사용처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바이든 캠프는 미국의 제조업 보호 및 부흥을 위한 재정지출을 약속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산업·통상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할 때,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14) 최근 일각에서는 바이든 캠프에 가담한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스테파니 켈톤(S. Kelton) 교수와 그린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 Ocasio-Cortez) 하원의원 등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이라 불리는 경제적 견해의 타당성 내지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학문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현대화폐이론은 발권력을 지닌 정부의 파산은 불가능하기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지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주류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 Krugman)과 그레고리 맨큐(G. Mankiw) 등이 그 이론적 빈약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제롬 파월(J. Powell) 미 연준 의장 역시 "그냥 틀린 말"이라며 지지자들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참고문헌>

강구상, 김종혁, 임지운,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3권 제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9. 11., pp. 1~16.

Chetty R., J. N. Friedman, N. Hendren, M. Stepner, and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Evidence from a New Public Database Built Using Private Sector Data," *NBER Working Paper No. 27431*, November 2020.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9 to 2029*, January 2019.

_____, *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20 to 2030*, September 2020.

Fairlie, R., "The impact of COVID-19 on small business owners: Evidence from the first three months after widespread social-distancing restrictions,"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29, 2020, pp. 727~74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The Great Lockdown*, April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June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A Long and Difficult Ascent*, October 2020.

Tempalski, J., "Revenue Effects of Major Tax Bills Updated Tables for all 2012 Bills," *OTA Working Paper*, February 2013.

● 미 연구기관 보고서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 Analysis of Joe Biden's Tax Proposals," June 2020.

_____, "An Analysis of Joe Biden's Tax Proposals, October 2020 Update," October 2020.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 October 2020.

_____, "Understanding Joe Biden's 2020 Tax Plan," July 2020.

Moody's Analytics,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Trump vs. Biden," September 2020.

Penn Wharton Budget Model, "PWBM Analysis of the Biden Platform," September 2020.

_____, “The Updated Biden Tax Plan: Budgetary, Distributional, and Economic Effects,” March 2020.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Former Vice President Biden’s Tax Proposals,” April 2020.

_____, “Details and Analysis of President-elect Joe Biden’s Tax Proposals, October 2020 Update,” October 2020.

Tax Policy Center, “An Analysis of Former Vice President Biden’s Tax Proposals,” March 2020.

_____, “An Updated Analysis of Former Vice President Biden’s Tax Proposals,” November 2020.

● 보도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Factchecking Tax Claims in the 2020 Election,” October 21, 2020, http://www.crfb.org/blogs/factchecking-tax-claims-2020-election, 검색일자: 2020. 12. 6.

MacGuineas, M., “The national debt still matters, despite low interest rates,” November 2, 2020,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the-national-debt-still-matters-despite-low-interest-rates, 검색일자: 2020. 12. 6.

Pew Research Center, “As Economic Concerns Recede, Environmental Protection Rises on the Public’s Policy Agenda,” February 13, 2020,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0/02/13/as-economic-concerns-recede-environmental-protection-rises-on-the-publics-policy-agenda, 검색일자: 2020. 12. 6.

_____, “The U.S. budget deficit is rising amid COVID-19, but public concern about it is falling,” August 13, 2020,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8/13/the-u-s-budget-deficit-is-rising-amid-covid-19-but-public-concern-about-it-is-falling, 검색일자: 2020. 12. 6.

The Economist, “Joe Biden would not remake America’s economy,” October 3, 2020,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10/03/joe-biden-

would-not-remake-americas-economy, 검색일자: 2020. 12. 6.
The Wall Street Journal, "Biden Budget to Result in Highest Spending in Decades, Study Finds," September 14, 2020, https://www.wsj.com/articles/biden-after-rejecting-progressive-spending-plans-now-hones-multi-trillion-dollar-budget-11600075802, 검색일자: 2020. 12. 6.
_____, "This Election Highlights How Divided the Nation Remains," November 4, 2020, https://www.wsj.com/articles/this-election-highlights-how-divided-the-nation-remains-11604465413, 검색일자: 2020. 12. 6.

표·그림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s://www.bea.gov/data/gdp, 검색일자: 2020. 12. 6.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data, 검색일자: 2020. 12. 6.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data.html, 검색일자: 2020. 12. 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 검색일자: 2020. 12. 6.
Decision Desk HQ, https://results.decisiondeskhq.com, 검색일자: 2020. 12. 6.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 검색일자: 2020. 12. 6.
MIT Election Lab, https://electionlab.mit.edu/data, 검색일자: 2020. 12. 6.
OECD Tax Database, https://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 검색일자: 2020. 12. 6.
Opportunity Insights, https://tracktherecovery.org, 검색일자: 2020. 12. 6.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elections/2016/results/president, 검색일자: 2020. 12. 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바이든 정부 세제 개편 제안]

■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후보는 선거기간 중 다음과 같은 세제 관련 개편안을 제시함[1)]

■ 법인과 고소득 개인의 세금을 인상하고, 법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회계상 이익이 1억달러[2)] 이상인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한세 기준을 적용함
- 연간 소득 40만달러[3)] 이상인 개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
  -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12.4%의 노령, 생존자 및 장애 보험세(Old-ages,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를 신설하고, 2018년 폐지된 고소득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 상한액을 부활시킴
  - 개인소득세 최고 소득 구간의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함
  - 연 소득이 100만달러[4)]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자본소득에 대해 기존의 20%에서 근로소득과 동일한 39.6%의 세율을 적용함
-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모든 수입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해외 생산에 부과하던 세금의 2배 수준인 21%의 최저 세금을 부과함

■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확대함

-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CDCTC)를 1인당 최대 3천달러[5)]에서 8천달러[6)]로 확대함
  -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경우 1만 6천달러[7)]로 제한됨
- 17세 이하 아동에게 적용되던 아동 세액공제 상한액을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는 6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함
  - 17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코로나 특별법(HEROES Act)에 제안된 내용임
  - 본 공제는 2021년 첫 적용 이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됨
- 첫 주택 구입에 대해 최대 1만 5천달러의 소득공제를 제공함
- 건강보험료 세금공제를 확대하여, 소득의 8.5% 이상을 건강보험에 지출하지 않도록 함[8)]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1) Tax Foundation, Joe Biden - 2020 Tax Plan, "Details and Analysis of President-elect Joe Biden's Tax Plan"(October 22, 2020), https://taxfoundation.org/joe-biden-tax-plan-2020, 검색일자: 2020. 11. 23.
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7억원임
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4,280만원임
4)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700만원임
5)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2만 1천원임
6)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5만 6천원임
7)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71만 2천원임

[미국 -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부담 완화 정책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0년 11월 2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납부 옵션을 변경 및 확장하는 구제안을 발표함[9)]

■ 일시적으로 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의 경우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추심 절차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
- 월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Form 433-A 또는 B를 작성하여 재정상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세액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이자가 부과됨
- 납부가 지연되는 동안 신청자의 지불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함

■ 특정 납세자는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을 제출하여 실제 세액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10)]
- IRS 웹사이트 내 Compromise Pre-Qualifier 페이지에 제시된 문항에 응답한 후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안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해당 납세자에 대해 기존 분할 납부를 포함한 모든 징수활동이 중단됨
- IRS가 제안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제안이 자동으로 수락된 것으로 인정됨

■ 구제책으로서 납세 지연에 의한 과태료 면제안을 정리함
- 기존 과태료 면제 기준에서 후순위에 있던 합리적 사유에 의한 납세 지연을 구제책으로 제시함
  - 자금 부족 자체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자금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합리적인 사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11)]
- 최초 과태료 감면 정책(First Time Penalty Abatement)과 같은 세금신고서 미제출 혹은 세금 미납에 따른 행정적 구제책을 안내함[12)]
  -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거나 과태료가 징수된 과세연도 직전 3년간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으며, 현재 필요한 모든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함
  - 최초 과태료 면제 이후의 미납에 대한 과태료

8) Joe Biden for President: Official Campaign Website, "A Tale of Two Tax Policies: Trump Rewards Wealth, Biden Rewards Work," https://joebiden.com/two-tax-policies, 검색일자: 2020. 11. 16.
9) IRS, "IRS makes it easier to set up payment agreements; offers other relief to taxpayers struggling with tax debts"(November 2, 2020), https://www.irs.gov/newsroom/irs-makes-it-easier-to-set-up-payment-agreements-offers-other-relief-to-taxpayers-struggling-with-tax-debts, 검색일자: 2020. 11. 16.
10) IRS, Offer in Compromise, https://www.irs.gov/payments/offer-in-compromise, 검색일자: 2020. 11. 23.
11) ① 화재, 사상,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장애의 발생, ② 기록의 부재, ③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직계 가족의 사망, 중병, 무능력 또는 불가피한 부재, ④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와 신중함을 기하였으나 이행이 곤란하였음을 입증하는 기타 이유(IRS, Penalty Relief Due to Reasonable Caus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enalty-relief-due-to-reasonable-cause, 검색일자: 2020. 11. 23.
12) IRS, Penalty Relief Due to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or Other Administrative Waiver,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enalty-relief-due-to-first-time-penalty-abatement-or-other-administrative-waiver, 검색일자: 2020. 11. 23.

와, 미납액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부과되는 이자는 면제되지 아니함

■ 2019년 과세연도에 한하여 납부액이 25만달러[13]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재무제표 또는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아일랜드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자 관련 과세안 확정]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0년 10월 22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과세안을 확정함[14]

- 원격근무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 목적으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하루 최대 3.2유로[15]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업무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를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현물 혜택에 따른 과세 대상 명목 급여(benefit-in-kind)에 포함되지 않음
  - 비용이 제공되는 출장이 발생한 일자에 원격근무자가 지급받은 원격근무 비용은 과세 대상임
- 상기한 원격근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원격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원격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난방 및 전기 요금의 10%와 인터넷 요금의 30%에 대해 소득공제함
- 자택을 원격근무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주거용 부동산 공제는 유지되며, 지방재산세 감액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벨기에 - 고액 증권 보유에 대한 과세 결정]

■ 벨기에 정부는 2020년 11월 2일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고액의 증권에 대한 과세를 결정함[16]

- 명목 증권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평균가치가 100만유로[17]를 초과하는 경우 0.1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기준액과 100만유로 차액의 10%로 과세액이 제한됨
- 벨기에 정부는 금번 실시되는 증권계좌세는 모든 금융상품과 법인 소유의 증권계좌까지 포함하므로 합법적이고 공평한 세금이라고 설명함
  - 2017년 말 개인 증권계좌의 총평균가치가 5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0.15%의 세율로 부과하는 증권계좌세를 도입하였으나 2019년 10월 17일 위헌으로 폐지된 바 있음[18]

1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675만원임
14) Revenue eBrief No. 193/2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1932020.aspx, 검색일자: 2020. 11. 17.
15)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20원임
16) News IBFD, "Belgium - Belgium Announces New Annual Securities Account Tax," 06 Novem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1-06_be_1 (accessed 10 Nov. 2020)
17)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1,705만원임
18) News IBFD, "Belgium - Constitutional Court nullifies annual securities account tax," 21 October, 20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19-10-21_be_1 (accessed 24 Nov. 2020)

■ 다음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세 회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 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명목 증권 혹은 펀드로 전환함
- 100만유로 한도를 피하기 위해 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여러 증권계정에 분할함
- 증권계좌를 외국법인에 양도한 후, 증권을 외국 증권계좌로 이전함
- 본 남용 방지조항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소급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스페인 -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 2020년 10월 27일 스페인 재무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9]
-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 및 자본소득세의 완전(100%) 면제가 95%로 제한됨
  - 최소 1년 동안 중단기간 없이 자회사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배당 및 자본소득
  - 취득가액이 2천만유로[20] 이상인 자회사를 소유한 기업의 배당 및 자본소득(단, 해당 자회사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그룹 내에서 발생한 배당 및 자본소득
  - 모회사가 특정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 배당 및 자본소득세에 대한 100% 면제는 전년도 매출액이 4천만유로[21]를 초과하지 않는 국내 거주 기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됨
  - 해당 면제조항은 자회사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적용됨
- 연 30만유로[22]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47%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 20만유로[23]를 초과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26%의 세율을 적용함
  - 기존에는 5만유로[24]를 초과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23%의 세율을 적용하였음[25]
- 복지제도에 대한 연간 기여금(예: 연금제도, 보장성 저축제도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8천유로[26]에서 2천유로[27]로 축소함

19) Bloomberg Tax, Spain MOF Presents 2021 General State Budget,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8JKUK1C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search=BNA%25200000017575a7d8ccab7575af64fb0004#jcite—, 검색일자: 2020. 11. 18.; IBFD, Government Reduces Full Exemption for Certain Dividends and Capital Gains to 95% Exemption in the Budget Bill for 2021 (Nov 5, 2020); EY, Spain releases 2021 State Budget Bill, https://www.ey.com/en_gl/tax-alerts/spain-releases-2021-state-budget-bill, 검색일자: 2020. 11. 18.
2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3억 5천만원임
21)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27억 150만원임
2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9,500만원임
2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6,350만원임
24) 2020. 12.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50만원임
25) KPMG, Tax rates,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spai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0. 12. 2.
26)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4만원임
27)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3만원임

<표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단위: %, 유로)

소득세율	과세표준	
	현행(2020년)	변경 후(2021년)
19	0 ~ 12,450	0 ~ 12,450
24	12,450 ~ 20,200	12,450 ~ 20,200
30	20,200 ~ 35,200	20,200 ~ 35,200
37	35,200 ~ 60,000	35,200 ~ 60,000
45	> 60,000	60,000 ~ 300,000
47	해당없음	> 300,000

출처: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spai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0. 12. 1.;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0/11/flash-alert-2020-453.html, 검색일자: 2020. 12. 1.

- 설탕 및 가당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10%에서 21%로 인상함
- 디젤연료에 적용되는 세금을 기존의 1천리터당 379유로에서 417유로로 인상함
  - 난방 또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젤연료는 제외
-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수입세(Insurance Premium Tax: IPT)를 기존의 6%에서 8%로 인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스페인 - 디지털서비스세 및 금융거래세법 의회 승인]

■ 2020년 10월 16일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금융거래세(FTT)에 관한 법률이 스페인 의회 승인 후 스페인 관보에 게재됨[28)]

■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29)]

- 디지털서비스(예: 온라인 광고, 중개 및 데이터 전송)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3%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됨
- 과세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30)]를 초과하면서 국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이 300만유로[31)]를 초과하는 기업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세가 면제됨
  - 중개 역할을 하지 않는 공급자의 웹페이지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 온라인 중개서비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사용자 간에 직접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
  - 주된 목적이 디지털 콘텐츠, 통신 서비스, 또는 결제 서비스의 공급인 온라인 중개서비스
  -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서비스
  -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

28) Bloomberg Tax, Spain Gazettes Laws Implementing Digital Services Tax, Financial Transactions Tax, 검색일자: 2020. 11. 23.
29) IBFD, Parliament Approves Digital Service Tax, 검색일자: 2020. 11. 23.
3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82억원임
31)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 5,260만원임

- 100% 직·간접적 지분 참여를 통하여 그룹의 일부를 구성하는 회사 간의 디지털 서비스

● 동 법률은 2021년 1월 16부터 시행됨

■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32]

● 주식 매입 이전 연도 12월 1일 기준 시가 총액이 10억유로[33]를 초과하며, 스페인 증권거래소나 EU 회원국 또는 제3국의 적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페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0.2%가 금융거래세로 부과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세가 면제됨

- 주식 또는 예탁증서의 발행을 통한 주식 취득
- 기업 공개(IPO)로 발행된 주식의 취득
- 위의 두 항목과 관련하여 최종 투자자들에게 주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플레이스먼트 에이전트(Placement Agents)의 수단적 주식 취득
- 공식적인 주식 상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격 안정을 담당하는 금융중개인에 의한 주식 취득[34]
- 중앙청산기구나 중앙예탁결제기관의 청산 또는 결제로 인한 주식 취득
-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용하는 시장 관행 내에서 유동성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식 발행자를 대신하여 금융 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식 취득
- 시장 창출활동에 따라 발생한 주식 취득
- 그룹 내 회사 간에 실현된 주식 취득
- 인수합병 조세제도하의 주식 취득
- 증권 파이낸싱 거래 및 특정 소유권 이전 담보약정[35]
- 단일청산이사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또는 국가청산기구의 결의에 따른 주식 취득[36]
- 특정 환매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한 그룹 내 회사의 자사주 또는 모회사의 주식 취득

● 동 법률은 2021년 1월 16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룩셈부르크 -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 룩셈부르크 재무부는 2020년 10월 14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37]

32) IBFD, Parliament Approves Financial Transactions Tax, 검색일자: 2020. 11. 23.
3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1조 3,175억원임
34) EU, REGULATION (EU) No 59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596&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35) EU, REGULATION (EU) 2015/23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R2365&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36) EU, REGULATION (EU) No 80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uly 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806&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37) IBFD, Luxembourg Plans to Implement a New Horizontal Tax Consolidation Regime as Part of Its 2021 Budget Legislation (Oct 21, 2020); Deloitte, Luxembourg draft 2021 budget law, https://www2.deloitte.com/lu/en/pages/tax/articles/luxembourg-draft-2021-budget-law.html, 검색일자: 2020. 11. 18.; PWC, Luxembourg 2021 Budget - tax rates pegged, some new targeted anti-avoidance measures announced, https://www.pwc.lu/en/newsletter/2020/luxembourg-2021-budget.html, 검색일자: 2020. 11. 18.

- 이산화탄소세를 도입하여, 2021년에는 이산화탄소 1톤당 20유로,[38] 2022년에는 25유로,[39] 2023년에는 30유로[40]를 부과함
- 임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입하거나 건설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한 가속상각률이 6%에서 4%로 변경됨
- 주택 보수 목적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함인 경우 보수 작업에 부과하는 VAT 세율이 기존의 17%에서 3%로 낮아지고,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연령은 20년에서 10년으로 낮아짐
- 중소기업의 VAT 면제 한도가 기존의 3만유로[41]에서 3만 5천유로[42]로 인상됨
- 종업원을 위한 새로운 이익 참여 프리미엄(New Profit Participation Pre-mium Scheme) 제도를 도입함
  - 이익 참여 프리미엄 제도는 우수 인력이 장기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회사에서 창출된 이익을 바탕으로 종업원에게 "참여형 프리미엄(participative premium)"을 제공하는 제도임
  -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총액은 전년도 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프리미엄은 연간 총보수(현금/현물 혜택 및 성과급 제외)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리미엄의 50%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본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스톡옵션 제도는 폐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핀란드 - R&D 세액공제 및 자산 즉시상각 한도 증액 법안 의회 제출]

■ 핀란드 정부는 2020년 10월 29일 R&D 세액공제 관련 법안(HE 196/2020)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43]

- 2021~2025 과세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적격 R&D 비용에 대하여 5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공인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자에게 청구한 금액(즉, 송장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연간 추가 공제 한도는 최소 5천유로[44]부터 최대 50만유로[45]까지임

38)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6,350원임
39)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2,938원임
4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9,526원임
41)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53만원임
4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11만원임
43) IBFD, Government Presents Proposal for New R&D Incentive for 2021-2025 (Oct 30, 2020)
44)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9만원임
45)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5,876만원임

■ 핀란드 정부는 2020년 10월 29일 자산의 즉시상각 관련 법안(HE 195/2020)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46]

- 기계장치 및 장비의 즉시상각 한도를 기존의 850유로[47]에서 1,200유로[48]로 증액함
  - 즉, 구매가액이 1,200유로 미만인 기계장치 및 장비는 즉시 상각됨
- 과세연도당 기계장치 및 장비의 즉시상각 한도는 기존의 2,500유로[49]에서 3,600유로[50]로 증액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프랑스 - 디지털서비스세 징수 예정 발표]

■ 프랑스 재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15일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를 2020년 12월에 징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51]

- OECD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해결책 도출기한을 2021년 중순으로 연장함에 따라,[52] 프랑스 정부는 예정대로 2020년 12월에 디지털서비스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함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신고 및 납부를 유예하였음[53]
  - 디지털서비스세 지침에 따르면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유예란 2020년도 4월, 10월의 중간예납을 유예한 것으로 2020년 12월에 이를 일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음

■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미국과 갈등을 겪어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실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음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5일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여 법안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발효함
-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반발하여 프랑스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의 징수를 연기함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9년 12월 2일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후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음[54]

---

46) IBFD, Government Proposes Increasing Limits on Assets Written Off Immediately (Oct 30, 2020)
47)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2만원임
48)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만원임
49)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0만원임
5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4만원임
51) Bloomberg Law, "France to Go Ahead With Digital Tax, Risking U.S. Tariffs," October 15,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0-14/france-to-go-ahead-with-digital-tax-risking-u-s-tariffs,(accessed November 17, 2020)
52) EY,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communiqué extends mandate of Inclusive Framework to continue negotiations on BEPS 2.0 project until mid-2021," October 14, 2020, https://globaltaxnews.ey.com/news/2020-6332-g20-finance-ministers-and-central-bank-governors-meeting-communique-extends-mandate-of-inclusive-framework-to-continue-negotiations-on-beps-20-project-until-mid-2021, (accessed November 24, 2020)
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4호, 2020, p. 14.
54)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december/conclusion-ustr%E2%80%99s-investigation, (accessed November 24, 2020)

- 미국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화장품, 비누, 가방 등의 프랑스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나 2021년 1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55]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이탈리아 -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발표]

■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10월 20일 법령(129/2020)을 관보에 게재하여 조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지함[56]

- 8월 시행령(August Decree, 104/2020)에 따르면 모든 조세의 납부기한 및 조세부과처분 시 발생한 가산세 등의 납부기한이 2020년 3월 8일에서 2020년 10월 15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으나,[57] 납부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조세의 기한도 연장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
- 과세관청의 납부통지 등 기타 처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지하고, 통지기한을 12개월 연장함
  - 기존 통지기한이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 통지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법령(137/2020)을 관보에 게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세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58]

-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입된 제재 조치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줄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림
  - 2020년 10~12월 상업용 자산을 임대한 경우 월 임대료의 6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2020년 11월이 납부기한인 사회보장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21년 3월 16일에 전액 납부하거나 2021년 3월 16일부터 시작하여 4회로 나누어 월별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imposta municipale propria)의 두 번째 중간 예납 의무를 면제함
- 2019년도 원천징수세의 신고기한을 2020년

55) The New York Times, "U.S. Will Impose Tariffs on French Goods in Response to Tech Tax," July 10, 2020, https://www.nytimes.com/2020/07/10/business/us-will-impose-tariffs-on-french-goods-in-response-to-tech-tax.html, (accessed November 24, 2020)
56) 이탈리아 재무부, https://www.agenziaentrateriscossione.gov.it/export/.files/it/DL_129_2020.pdf, (accessed November 24, 2020); IBFD,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Law Decree Suspending Certain Tax Payments and Collection0 Activities Until 31 December 2020," October 2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22_it_1.html, (accessed November 17, 2020)
57) 이탈리아 재무부, https://www.agenziaentrateriscossione.gov.it/it/Per-saperne-di-piu/covid-19/il-decreto-agosto-dl-104-2020/, (accessed November 24, 2020)
58) IBFD,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Law Decree Introducing New Urgent Measures," October 2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0-29_it_2#tns_2020-10-29_it_2, (accessed November 20, 2020)

10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10일로 연장함

■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11월 7일 제2차 락다운(lock down) 조치에 따라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함[59)]

- 적색 및 주황색 지역에서 영업을 폐쇄한 기업에 대하여 2020년 11월과 12월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고, 황색지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1월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함
  - 2020년 11월 3일 제2차 락다운 조치는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따라 적색, 주황색, 황색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조치하며, 2020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시행함[60)]
- 일반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4월 30일로 연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인도 -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발표]

■ 인도정부는 2020년 11월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AatmaNirbhar Bharat 3.0 경기부양책을 발표함[61)]

- 2020년 11월 12일 발표된 AatmaNirbhar Bharat 3.0의 경기부양액은 2.65조루피[62)] 규모로 12가지 경기부양책을 발표함[63)]
  - 조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건설업자 및 주택 구매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안이 포함됨[64)]

■ 인도 정부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주거용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건설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발표함[65)]

- 최대 2천만루피[66)] 가치의 주거용 부동산 1차 판매에서 공시가격(Circle rate)[67)]과 시장가격(Agreement Value) 간의 차이에 대한 제한을 20%로 상향함

59) 이탈리아 정부, http://www.governo.it/it/coronavirus-misure-del-governo, (accessed November 25, 2020); Bloomberg Law, "Italy Approves More Tax Relief for Virus-Hit Businesses," November 8, 202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63SF5HG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NzY2M2Q4YmJhNWI1MmNiZjRmOTUzNWNlNmE2YmQ5NTgiXV0%E2%80%94971b3cb2f057a654aa8303f837c7be268b7b3749&guid=399cd4d9-7f97-406a-b59f-62381495854c, (accessed November 17, 2020)

60) 적색지역(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비본질적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하고, 주황색 지역은 음식점 및 술집을 폐쇄하고, 황색지역은 음식점 및 술집을 저녁 6시 이후에 운영할 수 없음

61) Ministry of Finance, https://static.pib.gov.in/WriteReadData/userfiles/MOF.pdf;,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2321, 검색일자: 2020. 11. 17.

6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조 3,790만원임

63) Finance Minister announces measures on AatmaNirbhar Bharat 3.0,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2321, 검색일자: 2020. 12. 1.

64) IBFD, COVID-19 Pandemic: India Subsidizes Provident Fund Contributions and Provides Tax Relief to Developers and Home Buyers in New Stimulus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13_in_2.html, 검색일자: 2020. 11. 13.

65) Ministry of Finance, Tax Relief to Developers and HomeBuyers, https://static.pib.gov.in/WriteReadData/userfiles/MOF.pdf; 검색일자: 2020. 11. 17.

66)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100만원임

67) Circle Rate는 Plot, Built-up 주택,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등의 거래 시 지불할 의무가 있는 최소금액을 말함. Circle Rate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간 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음. Circle Rate는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Real Estate - Market Rate VS Circle Rate, https://www.entrepreneur.com/article/322174, 검색일자: 2020. 12. 1.

- 현행 인도 소득세법 Section 43CA는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10%로 제한하고 있어, 공시가격보다 10% 이상 낮게 거래되더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반영되고 있음
- 변경된 20%를 적용할 경우 부동산 건설업자는 공시가격 대비 20% 낮은 가격 범위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더라도 공급가격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 인도 소득세법 Section 56(2)(x)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는 중산층에 20%의 소득세 감면을 실시함[68)]

●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최대 2천만루피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한함

-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인도 중산층의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치율 연구원>

[싱가포르 - 코로나19 대응 법인세 신고 간소화 발표]

■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0년 11월 5일 코로나19 대응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법인세 신고 간소화 세부사항을 발표함[69)]

● 간소화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싱가포르 법인 중 연간 수익이 20만싱가포르달러[70)] 미만인 곳이며, 약 6만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이 가능함[71)]

■ 간소화된 법인세 신고에는 새로운 양식(Form C-S(Lite)을 사용함[72)]

● 기존 약식 법인세 신고양식(Form C-S)보다 3분의 2 축소된 6가지 필수 분야만 세부적으로 제공하면 됨

- 단,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자본손실 및 사업손실에 대한 소급공제, 그룹 공제(Group relief), 투자 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 간소화된 법인세 신고에 해당되는 회사는 모든 소득에 17% 세율로 과세[73)]되며, 재무제표와 세액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기업들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위 문서들을 요청할 경우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74)]

68) Finance Minister announces measures on AatmaNirbhar Bharat 3.0, Income Tax relief for Developers & Home Buyers,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2321, 검색일자: 2020. 12. 1.
69) Corporate Tax Filing Simplified for Companies,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Newsroom/Media-Releases-and-Speeches/Media-Releases/2020/Corporate-Tax-Filing-Simplified-for-Companies/, 검색일자: 2020. 11. 17.
7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491만원임
71) Corporate Tax Filing Season 2020,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Tax-Filing-Season-2020/, 검색일자: 2020. 11. 17.
72) Form C-S(Lite),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Taxes—Form-C-S-Form-C-/Form-C-S—Lite-/, 검색일자: 2020. 11. 18.
73) 2010년 과세연도부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회사의 법인세율은 17%임. CCH(2019/20), p. 32.
74) Bloomberg, Singapore E-Filing Tax Compliance Burden Reduction is 'Timely', 검색일자: 2020. 11. 17.

■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모든 기업이 2020년 12월 15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75)]

- 직전 회계연도 종료가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15일까지 법인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 2021년 1월 15일까지 1개월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함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법인세 신고연장서식(Request for Filing Extension for YA 2020 Corporate Income Tax Return)[76)]을 제출해야 함
  - 신고연장서식 제출일로부터 7~10 영업일 이내에 MyTax Portal(CIT/ E-Service)에서 확인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치율 연구원>

[인도네시아 - 연구개발(R&D) 관련 추가 세제혜택 지침 발표]

■ 인도네시아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MoF)는 2020년 10월 9일 연구개발(R&D)과 관련하여 추가 세제혜택 지침을 발표함[77)]

- 2019년 정부규정 제45호(Government Regulation No. 45 of 2019, GR-45)[78)]에 추가로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혜택 지침인 재무부 시행 규정(153/PMK.010/2020, PMK-153)을 발표함[79)]
-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내 법인 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소요된 실제 비용의 최대 300%까지 세액공제 가능함[80)]
- 해당 연도에 발생한 실제 연구개발비는 100% 세액공제되며, 추가로 연구개발비를 최대 200%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음[81)]
  -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사무소(Indonesian IPR office)에 등록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50% 세액공제가 가능함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해외 지식재산권사무소에도 등록한 경우 25% 세액공제가 가능함
  -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을 상업화할 경우 100% 세액공제가 가능함

75) IBFD, COVID-19 Pandemic: Singapore to Extend YA 2020 Corporate Income Tax Return Filing Deadline on Case-by-Case Basi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12_sg_1.html, 검색일자: 2020. 11. 18.
76) Request for Filing Extension for YA 2020 Corporate Income Tax Return, https://form.gov.sg/#!/5f8e8176c6e6560012f502d4, 검색일자: 2020. 11. 18.
77)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PMK) Nomor 153/PMK.010/2020, https://peraturan.bpk.go.id/Home/Details/148409/pmk-no-153pmk0102020, 검색일자: 2020. 11. 16.
78) 인도네시아 2019년 정부규정 제45호(No. 45 of 2019)는 2010년 정부규정 제94호(GR-94)를 개정한 것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국가의 인적자원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세계 기업의 참여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임. Govt Amends Regulation on Taxable Income Calculation, https://setkab.go.id/en/govt-amends-regulation-on-taxable-income-calculation/, 검색일자: 2020. 11. 16.
79) IBFD, "Indonesia Issues Guidance on Tax Incentive for R&D Activi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03_id_1.html, 검색일자: 2020. 11. 13. 2010년 과세연도부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회사의 법인세율은 17%임. CCH(2019/20), p. 32., 검색일자: 2020. 12. 1.
80)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PMK) Nomor 153/PMK.010/2020, https://peraturan.bpk.go.id/Home/Details/148409/pmk-no-153pmk0102020, 검색일자: 2020. 11. 16.
81) IBFD, "Indonesia Issues Guidance on Tax Incentive for R&D Activi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03_id_1.html, 검색일자: 2020. 11. 13.

- 인도네시아 정부 연구개발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적격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25% 세액공제가 가능함

■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시행 규정(153/PMK.010/2020, PMK-153)에 기재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82)]

● 2019년 6월 26일부터 인도네시아 법인 납세자가 실시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자산, 연구개발에 투입된 상품과 원재료, 연구개발 관련 임금비용,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인도네시아 정부 연구개발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지불한 연구개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세액공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지식재산권 등록시점 또는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 상업화 단계 시작시점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됨

-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연구개발 추가 세액공제는 해당 회계연도 과세소득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초과된 세액공제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법인납세자는 재무부 시행 규정(153/PMK.010/2020, PMK-153)에 따라 재무부에 연구개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연구개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83)]

● 2020년 10월 9일 이전에 적격 연구개발을 수행한 법인납세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연구개발 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치율 연구원>

[OECD - BEPS Action 14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 OECD는 2020년 10월 22일 BEPS 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체코, 덴마크,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8개국에 대한 2단계 상호검토 보고서(peer review)를 발표함[84)]

● 위 국가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BEPS Action 14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OECD는 프로젝트 참여국을 10개의 조로 나누어 최소 기준 충족 여부 및 "1단계 상호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 여부의 2단계 상호검토를 진행함[85)]

82) IBFD, "Indonesia Issues Guidance on Tax Incentive for R&D Activi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03_id_1.html, 검색일자: 2020. 11. 13.
83) IBFD, "Indonesia Issues Guidance on Tax Incentive for R&D Activi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03_id_1.html, 검색일자: 2020. 11. 13.
84) OECD, http://www.oecd.org/tax/dispute/making-tax-dispute-resolution-more-effective-new-peer-review-assessments-for-czech-republic-denmark-finland-korea-norway-poland-singapore-and-spain-october-2020.htm, (accessed November 17, 2020); IBFD, "BEPS Action 14: OECD Welcomes Positive Progress in Stage 2 Peer Review Monitoring Report Results," October 2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22_o2_1.html, (accessed November 17, 2020)
8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2호, 2019, p. 124.

- 보고서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각국 이행사항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고,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AP 통계를 도입함
  - BEPS Action 14 최소 기준은 MAP을 평균 24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국이 "MAP 통계보고체계(MAP statistics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한 MAP 통계를 도입함[86)]

■ 8개국에 대한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8개국은 BEPS 방지 다자협약(Multilateral Instrument)에 서명하였고 5개국은 비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음
- 덴마크,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은 한 국가의 반대가 상대 관할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지 또는 양자 합의 절차를 문서화함
- 8개국은 각각의 관할 관청에 인력을 더 배치하고, MAP 사례를 적시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선함
- 덴마크,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은 MAP 종결까지 요구되는 기간을 단축함
- 싱가포르는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싱가포르 법상의 기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MAP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법을 수정함
- 덴마크,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싱가포르는 MAP 지침을 발간 또는 개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OECD - 암호화폐 조세정책 보고서 발표]

■ OECD는 2020년 10월 12일 암호화폐 조세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가 간 암호화폐 조세정책을 개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정책 이슈를 다룸[87)]

- 보고서는 암호화폐 조세정책 입법에 대한 국가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특히 암호화폐에 대하여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다룸
- 본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조세정책 차이점에 대하여 통합적인 분석방법으로 접근한 OECD의 첫 번째 공식 보고서임

86) OECD, "MAP Statistics Reporting Framework," https://www.oecd.org/tax/dispute/mutual-agreement-procedure-statistics-reporting-framework.pdf, (accessed December 1, 2020)

87)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EY, "OECD releases report on taxing virtual currencies," November 3,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leases-report-on-taxing-virtual-currencies, (accessed November 17, 2020)

- OECD는 가상자산(crypto assets)과 관련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고 및 교환을 위하여 기술적인 제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함

■ 주된 내용은 첫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개념, 둘째, 조세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 셋째, 약 50개국의 암호화폐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한 것임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정의, 특징, 암호화폐의 합법성 및 가치, 암호화폐의 발행에서 폐지까지의 각 단계에서 조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조세정책의 실행에 대해서 다룸

- 가치안정 화폐(stable coins)[88]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89]에 대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룸

●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관점에서 약 50개국의 조세정책을 비교하여 핵심 고려사항을 다룸

-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는데 특히 영업권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암호화폐의 교환 및 상품·서비스 구매 시 암호화폐의 사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받은 상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새롭게 채굴한 암호화폐를 발행받는 행위 또한 부가가치세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88) 가치안정 화폐란,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것으로 이를 발행·매각하는 주체는 시중은행 등 제3자에게 법정화폐, 국채, 원자재 등과 같은 각종 안정자산을 담보 성격인 준비금으로 위탁하여 발행액과 준비금을 일치시킴으로써 가격안정성을 확보함. 전 세계 약 30종이 있으며 그중 테더(Tether)가 총 거래액의 90%를 차지하고, 리브라(Libra)는 페이스북이 고안 및 설계하고 있는 가치안정화폐임(한국금융연구원, 「암호화폐와 안정코인」, 『주간금융브리프』, 28(13), 2019, pp.19~21)

89)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화폐로, 실물과 같은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 이체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됨(김의석, 「디지털화폐와 화폐 변천과정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적패턴, CBDC, 리브라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5(2), 2020, p.117)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1]의 일환으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2021년도 예산계획안에 대한 평가 발표(2020. 11. 18.)[2]

※ 매년 10월 유로지역 국가들은 차년도 예산계획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EU 집행위는 11월 회원국의 예산계획안이 안정성장협약(SGP)[3]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함

● (경제전망) 예산계획안 기준 유로지역의 2020년 실질 GDP는 코로나19 영향으로 -7.6%, 2021년 5.9%로 전망되고(올해 11월 가을 전망 기준 2020년 -7.8%, 2021년 4.2% 전망), 경제 회복은 불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국마다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 비상 조치로 유로지역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불확실성이 증가

- (코로나19 위기 대응) 회원국들은 2020년 GDP 대비 4.2%, 2021년 2.4% 규모의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4]
  - 회복 및 복구 수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 따른 지원이 2021년에 이뤄지면 회원국들의 경제에 거시적인 영향과 공공채무 감소효과를 기대
- (재정수지) 유로지역의 GDP 대비 재정적자(headline deficit)는 2020년 8.6%에서 2021년 5.9%로 전망(가을 전망 기준 2020년 재정적자 8.8%, 2021년 6.4%)
- (국가채무) 유로지역의 GDP 대비 채무는 2020년 101.5%, 2021년은 100.9%로 전망되어 가을 전망과 대체로 유사(2020년 가을 전망 대비 -0.2%p, 2021년 -1.4%p)

● (예산계획안의 안정성장협약(SGP) 요건 준수 여부) 대부분의 회원국 예산계획안은 2020년 7월

1) EU의 경제·재정 정책의 조정 및 감독에 대한 연간 순환과정으로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율에 맞추어 조정함
   • European Semester의 주요 과정
   - 준비단계(전년 11~12월) Autumn Package - 연간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경고체계보고서, 유로지역 회원국 예산안 평가, 유로지역에 대한 권고안 등 발표
   - 정책지침(1~3월) Winter Package - 심층검토, 국가별 보고서 등 발표
   - 국가별 목표, 정책, 계획(4~7월) 회원국별 국가개혁 프로그램,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 Spring Package - 국가별 정책권고, 안정성장협약 관련 주요 결정 발표
   - 실행(7월~연말) - 유로지역 회원국별 차년도 예산 계획 제출
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Semester Autumn Package: Supporting a sustainable and inclusive recovery amid high uncertainty, 2020. 11. 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105, 검색일자: 2020. 11. 20.
   European Commission, Draft budgetary plans 2021, 2020. 11. 18.,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1_en, 검색일자: 2020. 11. 20.
3)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EU 국가들이 건전 재정을 추구하고 재정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①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거나 ② 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서 충분한 속도로 채무를 감축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초과적자 시정절차(EDP)가 개시될 수 있음. 또한 중기재정목표(MTO)를 위반(구조적 재정수지 목표와 지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심각한 위반 시정 절차(SDP)를 개시할 수 있음
4) (보건 강화, 노동자 및 기업 지원) 2020년 GDP 대비 3.4%, 2021년 0.9%
   (간접세 감면, 추가 공공사업 등) 2020년 GDP 대비 0.8%, 2021년 1.5%

이사회의 재정정책 권고*를 준수하고 있으며, 계획안의 조치들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재정준칙 면책조항[5]이 활성화됨에 따라 2020년 7월 이사회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면서 경제 상황이 가능할 때 중기 재정 건전성 유지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함

- (국가별)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의 예산안에 제시된 일부 조치들은 일시적이지 않거나, 지출을 상쇄하는 세입 마련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
  - 13개국[6]의 조치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조치
  - 루마니아는 2019년 안정성장협약의 적자 기준 위반으로 2020년 4월부터 과도한 적자시정절차(EDP)를 진행하고 있음[7]
  - 6개국[8]은 코로나19 발생 전 중기 정부채무 수준과 지속가능성 과제를 감안할 때, 예산 지원 시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한편 집행위는 European Semester의 가을 재정 패키지(Autumn fiscal package) 일환으로 회원국 예산계획안 평가 외에도 사후감독보고서(키프로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구제금융 종료 후속 검토 보고서(8차)[9]도 함께 발표함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의 일환인 2021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발표 (2020. 11. 18.)[10]

※ 경고체계보고서(AMR) 분석은 EU 회원국 또는 EU 전체 경제의 기능을 저해하는 불균형(imbalance)[11]을 확인하고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s Procedure: MIP)의 첫 단계인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국가를 선별함

● (전반적 평가)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불균형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팬데믹 이전에 이미 불균형 상태에 있던 회

5) 2020년 3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EU 재정준칙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EU 재정준칙 일시 중단에 합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3월 2호, 2020, pp. 3~4,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042 참조

6)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7) EU 집행위는 2020년 4월 3일 루마니아에 대한 과도한 적자 시정절차 시행을 권고하면서 루마니아의 과도한 적자 수준(201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8%로 EU의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기준인 GDP 대비 3% 초과)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루마니아가 채택한 정책 결정의 결과로 초래되었음을 강조함(루마니아는 2019년 9월부터 노령연금 지출을 매년 15%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2020년 2월부터 2배로 늘리는 등의 재원 대책 없는 지출 증가 계획을 설정)
EU 차원의 안정성장협약 재정준칙 면책 조항이 2020년 3월 23일 채택되면서 EU 집행위는 2020년 5월 20일에 면책 조항을 반영한 국가별 권고를 발표했으며, 2020년 9월 15일 루마니아 당국이 EU 권고에 따른 개선 노력을 담은 보고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함. 2020년 9월 19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루마니아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2021년 봄에 거시경제 전망을 고려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n the fiscal situation in Romania, 2020. 11. 18.)

8)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9) EU 집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당국이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많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행했다고 평가함
European Commission, Enhanced Surveillance Report - Greece, November 2020, 2020. 11. 18.,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nhanced-surveillance-report-greece-november-2020_en

10) European Commission, 2021 European Semester: Alert mechanism report, 2020. 11. 18.,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021-european-semester-alert-mechanism-report_en, 검색일자: 2020. 11. 20.

11) 불균형은 경상수지, 일반정부 채무, 실업률 등 14개의 주요 지표와 추가 보조 지표들을 기초로 평가

원국들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불균형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심층검토 대상) 2020년 2월에 이미 거시경제 불균형 또는 과도한 불균형 상태로 확인된 12개 회원국을 심층검토(in-depth review) 대상으로 지정함
  -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독일,[12]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 (향후 단계) 올해 European Semester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회복 및 복구 수단[13](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조성을 고려하여 일정 및 고려사항 등을 조정 중에 있으며, 심층검토 보고서는 2021년 봄 발표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IMF

■ IMF, G20 2020 보고서 발간(2020. 11. 2.)[14), 15)]

- (배경) 코로나19 대유행은 광범위한 인명 손실과 경제위기를 초래했으며, 빈곤 및 불평등 심화, 채무 과잉 등의 부작용을 동반함
  - (경제활동) 경제활동은 이동성(mobility)이 증가하면서 3분기에 회복하는 듯 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며 다시 둔화됨
  - (불평등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채무과잉) 신흥국은 제한적인 재정여력으로 공공부채 증가 폭이 선진국에 비해 작으나, 선진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함([그림 1] 참조)

12) 독일은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의 대외 불균형 카테고리 아래 경상수지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심층검토 대상으로 선정[EU 집행위는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3년 평균)을 -4%에서 +6%로 설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2012년부터 6%를 초과하고 있음(2017년 8.3%, 2018년 7.9%, 2019년 7.4%)]. 코로나19 위기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어들었으나, EU 집행위는 2020년 2월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고려하여 불균형의 지속성, 향후 감소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원문 참고
- European Commission, 2021 European Semester: Alert mechanism report, 2020.11.18, p. 46,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021-european-semester-alert-mechanism-report_en,
- European Commission, 2021 European Semester: Alert mechanism report - Annex, 2020.11.18, p. 96,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alert_mechanism_report_2021_swd_statistical_annex.pdf

13) EU 차원의 지원으로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0월 1호, 2020, pp. 2~3,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267 참조

14) https://www.imf.org/external/np/g20/110220.htm

15) 본 재정동향에 실린 내용은 G-20 2020 Report on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보고서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의 원문을 참고

[그림 1] 공공부문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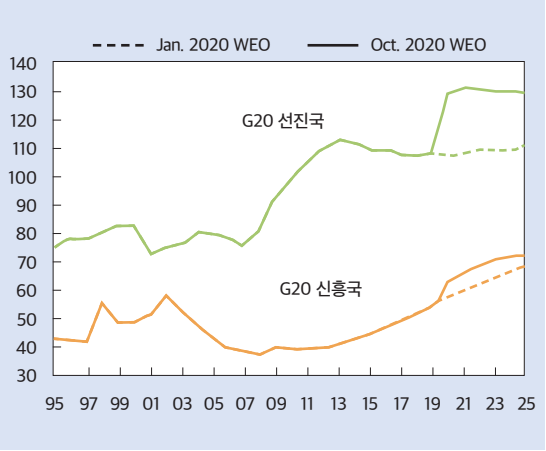

주: 점선인 Jan. 2020 WEO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2020, 1월호 예측치를, 실선인 Oct. 2020 WEO는 10월호 예측치를 의미함

출처: G-20 2020 Report on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Figure 6

- (선진국) 2020년 선진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전년도 대비 20%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규모 재정적자(fiscal deficit)와 전례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기인함
- (신흥국) 올해 신흥국 공공부채는 전년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외화표시부채(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는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통화가치가 절하된 일부 국가(멕시코)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 (위기극복) 탄력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위기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야 하며, 위기 후에도 경기부양책을 지속해야 함

- (바이러스 통제)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 (재정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재정지원과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구조개혁) 충격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많은 개혁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며,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는 국가마다 상이함
- (재정건전성) 대유행이 종식되면 채무비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정책공조) 이번 위기는 국경 간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빈국 채무부담) 최빈국 채무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예: 특별인출권을 통한 글로벌 유동성 지원)
  - (백신 개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국제적 공조는 개발 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빠르고 안전한 재개에 기여할 수 있음
  - (무역긴장 완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관세 장벽은 철폐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용품과 다른 필수품에 대한 장벽은 저소득국에 더 큰 피해를 줌
  -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은 탄소 배출 감소 및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IMF 총재,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2020. 11. 22.)[16]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G20 국가들은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대규모 파산을 예방했으며 경제회복을 돕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G20 정상들의 연대 및 다자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 ① (보건위기 종식) 국제사회는 백신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으로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함
  - 이 경우 회복에 가속도가 붙어 세계 소득(global income)은 2025년까지 약 9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② (경제 회복) 위기로 인한 충격의 장기화를 막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 확대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 G20 국가들이 협력하는 경우, 각국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비해 3분의 2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③ (기반 마련) 전 세계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보다 건전한 세계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G20 국가들은 다자 무역체계를 통한 국제무역 활성화, 지속가능한 조세시스템 구축, 새로운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배소민 위촉연구원>

OECD

■ G20 요청 보고서 New horizons: Structural policies for a strong recovery and a sustainable, inclusive and resilient future 발표(2020. 11. 22.)[17]

● (배경)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에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Action Plan을 지원하기 위해 OECD에 동 보고서를 요청

-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 옵션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구조정책이 중요

- (자원 재배분) 사람, 회사, 자본이 보다 유망한

1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11/22/pr20353-imf-managing-director-kristalina-georgieva-urges-g20-leaders-build-better-global-economy

17) OECD Newsroom, "G20: Global co-operation and strong policy action needed for a sustainable recovery," 2020. 11. 22., https://www.oecd.org/newsroom/g20-global-co-operation-and-strong-policy-action-needed-for-a-sustainable-recovery-oecd.htm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구직 장려를 위한 고용유지제도 조정, 근로자의 이동성 및 기업 진입장벽 제거, 경쟁 촉진,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자원 재분배를 활성화하고 생산성 및 성장률을 제고
- 역동적이고 공정하며 생산적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 및 규제 정책을 활용
- 기업 부채나 파산 문제를 처리하고, 디지털 도구를 최대한 활용

- (인력 지원)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소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 직원 재교육 및 고용 알선 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적절하고 선별적인(targeted) 소득지원을 보장
- (지속가능한 재건) 미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만들어야 함
  - 공공지출을 검토(spending review)하고 수입원을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환함으로써 재정 상황을 강건하게 개선
  - 단기 및 장기적으로 보건 대응책에 대해 협력·조정
  - 중기적으로 부채지속가능성을 보장하되 최빈국에서는 부채 위기를 해결

[그림 2] 2020년 3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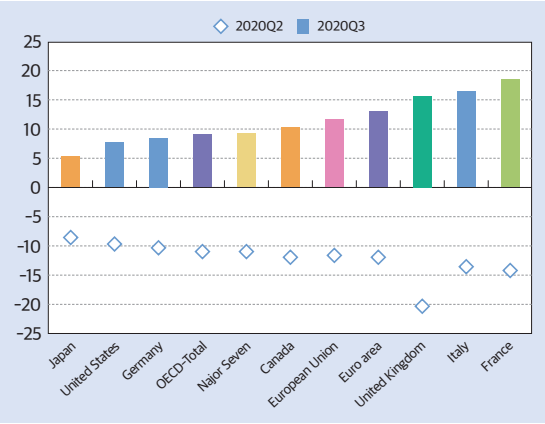

출처: OECD News Release, 2020. 11. 19.

  - 저탄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

■ 2020년 3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0. 11. 19.)[18)]

-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여파로 상반기 GDP가 전례 없이 하락한 이후 OECD 지역의 GDP는 3사분기 9.0%로 반등하였으나 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
- G7 국가의 3사분기 GDP를 보면, 2사분기에 가장 급격한 하락을 보였던 국가에서 가장 크게 반등

18) OECD News Release, "OECD GDP rebounded by 9.0%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but remains below pre-pandemic high," 2020. 11. 19., https://www.oecd.org/sdd/na/GDP-Growth-Q320.pdf

- 프랑스는 2사분기 -13.7%에서 3사분기 18.7%, 이탈리아는 -13.0%에서 16.1%, 영국은 -19.8%에서 15.5%를 기록
- 또한 캐나다(-11.5%→10%), 독일(-9.8%→8.2%), 일본(-8.2%→5.0%), 미국(-9.0%→7.4%) 등 다른 모든 주요 국가에서도 반등

※ 한국: (2사분기) -3.3%, (3사분기) 1.9%

● 유로지역과 유럽연합의 GDP는 전분기 각각 -11.8%, -11.4%에서 3사분기 12.6%, 11.6%로 반등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선임연구원>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의회예산처(CBO), FY2020 결산 확정치 발표(2020. 11. 9.)[19)]

● (재정수지) 재정적자는 3.1조달러로 전년(9,840억달러, GDP 대비 4.6%) 대비 약 3배 이상(2조 1,480억달러) 증가하여 GDP 대비 14.9% 기록

* FY2020 상반기 재정적자는 0.7조달러, 하반기는 2.4조달러 증가
* GDP 대비 규모 기준, FY2020 재정적자 규모는 1945년(21.0%) 이래 가장 큰 규모

● (세입) 전년 대비 1%(420억달러) 감소한 3조 4,200억달러(GDP 대비 16.3%)

- 주요 세입항목인 개인소득세(-6%) 및 법인세(-8%) 수입 모두 전년 대비 감소(사회보장급여세(payroll taxes)는 5.4% 증가)
- 관세(customs duties)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0억달러) 감소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의 이전수입(remittances)은 단기 이자율 하락이 부분적 영향을 끼쳐 전년 동기 대비 55%(290억달러) 증가

● (세출) 전년 대비 47%(2조 1,050억달러) 증가한 6조 5,520억달러(GDP 대비 31.2%)

- 주요 세출항목인 사회보장지출(5.0%), 메디케어(19.3%) 및 메디케이드(12.0%) 등 주요 의무지출(mandatory programs) 프로그램 모두 증가
- 실업수당 지출은 전년(310억달러) 대비 4,450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순이자지출은 이자율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8.5%(360억달러) 감소
- 재난지원금(recovery rebates)이 포함된 환급성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 규모는 올해 3,590억달러로 전년(880억달러) 대비 2,710억달러 증가
- 중소기업청(SBA) 소관 지출 예산은 급여 보호프로그램(PPP)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4억 5,600만달러) 대비 상승한 5,770억달러

● GDP 대비 국가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79.2%(FY2019) → 100.1%(FY2020)로 증가

19)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746

[그림 3] 실질 GDP 추이

(단위: 전 분기 대비 % 변화, 계절조정, 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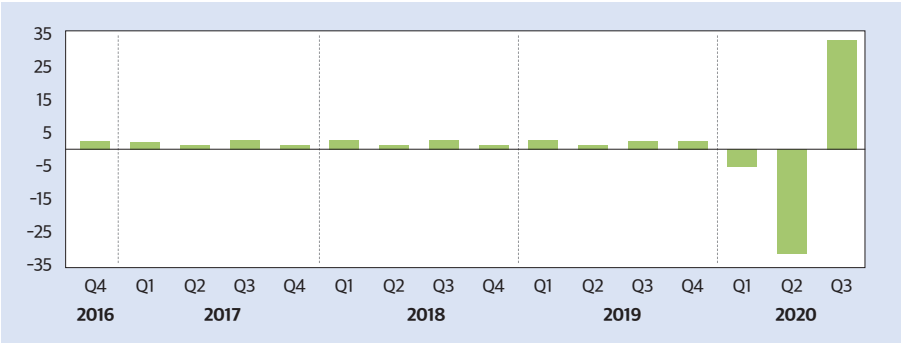

출처: 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20 (Advance Estimate), 2020. 10. 29.

[기타]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0년 3분기 GDP(속보) 발표(2020. 10. 29.)[20]

- 2020년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3.1%(연율, 속보치)로 집계돼 2분기 성장률(-31.4%)에서 크게 반등(최근 4개년 추이는 [그림 3] 참조)
- 개인소비지출(25.3%p), 민간재고투자(6.6%p), 수출(4.9%p), 비주거고정투자(2.9%p), 주거고정투자(2.1%p)가 성장에 기여했으나 수입(-8.0%p), 연방정부지출(-0.4%p), 주·지방정부지출(-0.3%p)이 이를 일부 상쇄
- 명목GDP 성장률은 38.0%(연율)로, 역시 2분기 성장률(-32.8%)에서 크게 반등
- 경제자문위원회(CEA)[21]는 이번 회복이 정부의 성장촉진 정책과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큰 규모의 지원 덕분이라고 평가

■ 미 의회예산처(CBO), 연방학자금 융자 현황 보고서(The Volume and Repayment of Federal Student Loans: 1995~2017) 발표(2020. 11. 10.)[22]

- (대출 규모) 연방학자금[23), 24)] 대출 잔고(outstanding) 규모는 1995년에 1,870억달러 → 현재(2017년) 7배 증가한 1.4조달러로 집계

20) 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20 (Advance Estimate)," 2020. 10. 29., https://www.bea.gov/news/2020/gross-domestic-product-third-quarter-2020-advance-estimate
21) CEA, "The Great American Recovery: Third Quarter GDP Blows Past Expectations," 2020. 10. 29.,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great-american-recovery-third-quarter-gdp-blows-past-expectations/
22)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706
23) 연방학자금은 Higher Education Act of 1965(HEA) Title Ⅳ에서 규정하고 있음
24) 1995년~2017년 사이의 주요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① 연방가족교육대출(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FFEL, 1965 회계연도에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 프로그램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 후 보증권한 폐지), ② 연방직접대출(The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Program, 1994 회계연도에 도입한 직접대출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구분

- (대출규모 증가 원인) 대출 학생 수 및 평균 대출 금액 증가와 함께 채무 상환비율이 감소하면서 연방학자금 대출규모도 증가함
  - 같은 시기(1995~2017년)에 고등교육 등록자 수 및 평균 학업비용의 상승도 증가 원인으로 분류되고 있음
  - 또한, 법정 학자금 대출 한도 및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 함께 대출 상환 프로그램 등의 변화도 대출규모 및 상환규모 등에 영향을 미침
- (학자금 채무 불이행)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이후 3년 안에 채무불이행 상태로 전환된 비중은 2005~20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음
- (재정 영향)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재무부의 융자 자금조달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체계이기에 대출규모 및 잔고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재정적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다만, 학자금 직접 대출 프로그램 중 보조융자(subsidized loan) 및 학부모 대출[25](PLUS loan[26])은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 재무부, 일부 긴급대출제도 종료 계획 발표 (2020. 11. 19.)[27]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부 장관은 CARES 법에 의해 부여된 일부 긴급대출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미사용 잔액을 반환할 것을 연준에 요청

  ※ 연준은 긴급대출제도[28]를 당초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29]한 바 있음

  - PMCCF, SMCCF, MLF, MSLP, TALF는 예정대로 12월 종료
  - 다만, 기존 외환안정자금(Core ESF)을 투입한 CPFF와 MMLF, 재무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PDCF, PPPLP는 90일 연장을 요청
  - 재무부는 CARES 법이 부여한 4,540억달러 중 1,950억달러를 종료 예정 제도들에 지원했으며, 대출 한도 약 2조달러 중 약 250억달러가 실제 지원됨
- 연준은 당초 긴급대출제도 종료에 부정적이었으나,[30] 미사용액 반환을 위해 재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회신[31]하고 반환하겠다고 발표[32]

25) 학부모대출(PLUS Loan)은 부모 의존 학부생 또는 일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함
26) PLUS = Parent Loans for Undergraduate Students
27) 미 재무부, Letter from Secretary Steven T. Mnuchin on the Status of Facilities Authorized Under Section 13(3) of the Federal Reserve Act, 2020. 11. 19.,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190
28) 연준은 3월 17일, 3월 18일, 3월 23일, 4월 9일 등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참조
29) 4월 27일 Municipal Liquidity Facility(현금 흐름 압박을 받고 있는 주·지방정부의 지방채를 매입), 7월 28일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국고채전문딜러에 재할인 대출을 제공) 등을 연장하기로 발표.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기업어음시장에서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매입)는 2021년 3월 17일 종료 예정.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7월 2호, 2020 참조
30) The New York Times, "Mnuchin to End Key Fed Emergency Programs, Limiting Biden," 2020. 11. 19., https://www.nytimes.com/2020/11/19/business/economy/mnuchin-fed-emergency-programs.html
31) Fed, "Letter from Chair Powell to Secretary Mnuchin regarding emergency lending facilities," 2020. 11. 20., https://www.federalreserve.gov/foia/letter-from-chair-powell-to-secretary-mnuchin-20201120.htm
32) Fed, "Testimony: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2020. 12. 1.,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testimony/powell20201201a.htm

- 재무부가 연장을 요청한 4개 제도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33]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장준희 선임연구원>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19 결산 국회 제출(2020. 11. 20.)[34]

● FY2019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9조 1,623억엔이며, 추경 후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4조 5,107억엔(4.3%)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101조 3,664억엔이며, 세출예산 현액 대비 8조 3,618억엔(7.6%) 감소함에 따라 재정법 제41조[35]에 의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잉여금은 7조 7,959억엔으로 나타남(<표 1>, <표 2> 참조)

- 세출예산 현액 중 연내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한 금액은 6조 5,780억엔이며, 불용액은 1조 7,838억엔, 예비비 사용액은 4,668억엔으로 집계됨

●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계는 386조 5,519억엔이며, 세출결산 총계는 374조 1,696억엔임

● 정부관계기관 세입결산 총계는 1조 2,645억엔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44억엔으로 집계됨

<표 1> FY2019 일반회계 결산개요

(단위 : 억엔, 단위 미만 버림)

구분	금액	참고
1. 세입결산 총액	1,091,624	
2. 세출결산 총액	1,013,665	
3. 재정법 제41조 잉여금	77,959	(1-2)
4. 2018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5,274	
5. 2019년도 신규발생 잉여금	72,685	(3-4)
6. 2020년도 이월 세출예산 재원 순잉여금의 계산상 공제액	65,781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2019년도 신규발생 잉여금	6,904	(5-6)
8.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의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52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0	
(2) 공항정비사업비등 재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0	
(3) 부흥비용 및 부흥상환비용 재원 (FY2011 추경예산(제3호) 이월분 및 FY2019 예산에 의한 잉여금)	52	
9. 재정법 제6조[1]에 의한 순 잉여금	6,852	(7-8)

주: 1. 억엔 미만 버림으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재정법 제6조: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 중 2분의 1을 하회하지 않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연도(翌翌年度)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해야 함

출처: 재무성,「令和元年度決算の概要」,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19/01kessangaiyou.pdf, 2020. 11. 20.

33) Fed, "Federal Reserve Board announces extension through March 31, 2021, for several of its lending facilities that were generally scheduled to expire on or around December 31," 2020. 11. 30.,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1130a.htm

34) 재무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19/ke0211.html

35) 재정법 제41조: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시킨다."

<표 2> FY2019 일반회계 예산결산 비교표

(단위 : 억엔, 단위 미만 버림)

<table>
<tr><th colspan="5">예산(추경 후)</th><th colspan="4">결산</th></tr>
<tr><th colspan="3">세입</th><th colspan="2">세출</th><th colspan="2">세입</th><th colspan="2">세출</th></tr>
<tr><td colspan="3"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전년도 이월액 50,766</td><td colspan="2" rowspan="2">전년도 잉여금
(이월재원
포함) 67,227</td><td>내년도 이월액</td><td>65,780</td></tr>
<tr><td colspan="2">2016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
사용 잔액 5,274
신규발생 잉여금
세출불용 17,838
세입증감 -10,934</td></tr>
<tr><td colspan="3" rowspan="8">전년도 잉여금 11,186</td><td colspan="2">세출예산액 1,046,516</td><td colspan="2" rowspan="8">-</td><td colspan="2">세출결산총액 1,013,664</td></tr>
<tr><td colspan="2"><주요 내역></td><td colspan="2">사회보장관계비</td></tr>
<tr><td colspan="2">340,623</td><td colspan="2">문교 및 과학진흥비</td></tr>
<tr><td colspan="2">63,178</td><td colspan="2">59,105</td></tr>
<tr><td colspan="2">국채비</td><td colspan="2">국채비</td></tr>
<tr><td colspan="2">225,062</td><td colspan="2">222,857</td></tr>
<tr><td colspan="2">지방교부세교부금</td><td colspan="2">지방교부세교부금</td></tr>
<tr><td colspan="2">160,324</td><td colspan="2">160,324</td></tr>
<tr><td colspan="2">공채금 수입</td><td>370,818</td><td colspan="2">방위관계비</td><td colspan="2">공채금 수입</td><td>365,818</td><td colspan="2">방위관계비</td></tr>
<tr><td>건설공채</td><td>91,437</td><td colspan="2">56,748</td><td>건설공채</td><td>91,436</td><td colspan="2">56,266</td></tr>
<tr><td>특례공채</td><td>279,381</td><td colspan="2">공공사업관계비</td><td>특례공채</td><td>274,381</td><td colspan="2">공공사업관계비</td></tr>
<tr><td colspan="2">세외수입</td><td>62,712</td><td colspan="2">84,752</td><td colspan="2">세외수입</td><td>74,612</td><td colspan="2">76,096</td></tr>
<tr><td colspan="2" rowspan="2">세수</td><td rowspan="2">601,800</td><td colspan="2">기타</td><td colspan="2" rowspan="2">세수</td><td rowspan="2">584,415</td><td colspan="2">기타</td></tr>
<tr><td colspan="2">115,826</td><td colspan="2">104,008</td></tr>
<tr><td><주요 내역></td><td></td><td colspan="2"></td><td><주요 내역></td><td></td><td colspan="2"></td></tr>
<tr><td>소득세</td><td>190,640</td><td colspan="2"></td><td>소득세</td><td>191,706</td><td colspan="2"></td></tr>
<tr><td>소비세</td><td>190,620</td><td colspan="2"></td><td>소비세</td><td>183,526</td><td colspan="2"></td></tr>
<tr><td>법인세</td><td>117,150</td><td colspan="2"></td><td>법인세</td><td>107,971</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세입예산액</td><td>1,046,516</td><td>세출예산액</td><td>1,097,283</td><td colspan="2">세입결산 총액</td><td>1,091,623</td><td>세출결산 총액</td><td>1,013,664</td></tr>
</table>

출처: 재무성, 「令和元年度決算の説明」 p. 20,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19/kessan_01_zenntaibann.pdf, 2020. 11. 20.

[기타]

■ 후생노동성, 예방접종법 및 검역법 일부 개정안 각의 결정 및 국회 제출(2020. 10. 27.)[36), 37)]

- (개정 취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 예방 접종 실시 체제의 정비 및 검역법 제34조의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조치
- (예방접종법 개정)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백신 접종에 대해 예방접종법의 임시 접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후생노동성 장관의 지시하에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시정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 예방접종 관련 실시체제 정비

36)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topics/bukyoku/soumu/houritu/203.html
37) 내각법제국, https://www.clb.go.jp/contents/diet_203/reason/203_law_001.html

• 접종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

• 예방접종으로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구제 조치나 부작용 의심보고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법의 현행 규정을 적용

※ 접종 권장 및 접종 노력 의무는 예방접종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감안하여 정령(政令)[38]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손실보상계약 체결

• 정부는 백신 사용에 따른 건강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한 제조판매업자 등의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검역법 개정) 검역법 제34조에 의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정령 지정기한을 감염증법에 의한 지정감염증 정령 지정기한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2020년 2월 14일, 검역법 제34조의 감염증으로 정령으로 지정(2021년 2월 13일까지가 기한). 정령 지정에 따라 동법에 기초한 격리, 체류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감염법 지정 감염증으로서의 기한은 2021년 1월 31일까지이나 1년 이내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 내각부, 2020년 3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 (2020. 11. 16.)[39]

● 2020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5.0%(연율 21.4%)이며, 명목 GDP 성장률은 5.2%(연율 22.7%)로 나타나 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됨[40] ([그림 4] 참고)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2.1%,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수출-수입)이 2.9%이며, 명목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2.7%,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수출-수입)은 2.6%로 나타남

- (민간수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4.7%(2분기는 ▲8.1%), 명목 4.8%(2분기는 ▲8.3%)이며, 이 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4.7%(2분기는 ▲8.5%) 명목 4.8%(2분기는 ▲8.7%)로 나타남. 민간주택은 실질 ▲7.9%(2분기는 ▲0.5%), 명목 ▲7.4%(2분기는 ▲1.7%), 민간기업설비는 실질 ▲3.4%(2분기는 ▲4.5%), 명목 ▲2.0%(2분기는 ▲6.0%), 민간재고 변동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0.2%(2분기 기여도는 0.3%), 명목 0.0%(2분기 기여도는 0.1%)로 나타남

- (공적수요)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실질 2.2%(2분기는 ▲0.4%), 명목 2.5%(2분기는 ▲1.3%)로 나타났으며,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실질 0.4%(2분기는 1.2%), 명목 1.0%(2분기는 0.7%), 공적재고 변동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0.0%(2분기 기여도는 ▲0.0%), 명목 0.0%(2

38) 일본 헌법 제73조 제6호에 따라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명령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효력을 가짐
39) 내각부,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40)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전 선수요가 있었던 2019년 3분기 이래 플러스 성장 전환

분기 기여도는 ▲0.0%)로 나타남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의 수출은 실질 7.0%(2분기는 17.4%), 명목 9.8%(2분기는 ▲20.2%), 재화·서비스의 수입은 실질 ▲9.8%(2분기는 2.2%), 명목 ▲7.0%(2분기는 ▲7.9%)로 나타남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계절조정계열이 전기 대비 0.3%(2분기는 0.4%), 원계열이 전년 동기 대비 1.1%(2분기는 1.4%) 증가함

■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본부, Go To 캠페인 자제 요청(2020. 11. 27.~11. 30.)[41), 42), 43)]

● 스가 총리는 제48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의 제언에 따라 Go To 캠페인[44)]의 자제를 요청함

- (Go To 잇[45)]) 삿포로 시 이외에도 27일부터 도쿄, 오사카, 나고야 시에서 음식점 운영시간 단축 요청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협조한 모든 점포에 대해 국비 지원 예정. 또한 Go To 잇 상품권은 10개의 도도부현에서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9개의 도도부현에서 4명 이하로 인원 제한을 실시[46)]
- (Go To 트레블[47)]) 삿포로, 오사카 시 거주자의 신규 예약 자제 권고 및 기존 예약에 대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요금은 이용자와 숙박시설의 부담이 없도록 국비 조치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독일

[기타]

■ 연방정부, 코로나19에 따른 부분봉쇄*로 피해 업체 추가 지원 합의(2020. 11. 6.)[48)]

*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주간 여가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부분봉쇄 도입에 합의함

● (긴급지원) 연방정부는 요식업, 문화, 레저산업 등 봉쇄 조치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매출손실 지원을 목적으로 약 100억유로 지출

41)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9_suga/actions/202011/27corona.html
42) 관광청, https://goto.jata-net.or.jp/info/2020112701.html
43)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shokusan/gaisyoku/hoseigoto.html#gotoeat_topic
44) Go To 캠페인 사업: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회복 대책으로 FY2020 추경예산으로 1조 6,794억엔을 편성, 관광 수요 침체 및 외출 자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광업, 음식업, 이벤트업을 대상으로 Go To 트레블, Go To 잇, Go To 이벤트, Go To 상점가 사업을 진행 중
45) 25% 할인된 가격의 프리미엄 상품권 구입 혹은 온라인 예약으로 점심 1인당 500엔, 저녁 1천엔의 포인트 적립
46) 10개 도도부현: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카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효고현 9개 도도부현: 홋카이도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아이치현, 교토도, 오사카부, 효고현, 오키나와현
47) 일본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숙박 및 여행 경비 총액의 1/2 상당을 국비 지원하는 사업. 1/2 중 70%를 현금으로(총액의 35%), 30%를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공통 쿠폰(총액의 15%)으로 지원
48) 연방재무부, Themen, Schlaglichter, Corona-Schutzschild. 2020. 11. 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Corona-Schutzschild/2020-10-29-neue-corona-hilfen.html

<표 3> 2020년 세수추계 결과[1)]

(단위: 억유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방정부	11월 추계	3,291 (2.1)	2,787 (-15.3)	2,969 (6.5)	3,166 (6.6)	3,316 (4.7)	3,427 (3.3)	3,538 (3.3)
	9월 추계	3,291 (2.1)	2,753 (-16.3)	2,952 (7.2)	3,139 (6.3)	3,310 (5.4)	3,442 (4.0)	-
주정부	11월 추계	3,245 (3.3)	3,118 (-3.9)	3,239 (3.9)	3,408 (5.2)	3,526 (3.5)	3,661 (3.8)	3,782 (3.3)
	9월 추계	3,245 (3.3)	3,065 (-5.5)	3,218 (5.0)	3,380 (5.0)	3,518 (4.1)	3,674 (4.4)	-
기초자치단체	11월 추계	1,148 (3.2)	1,049 (-8.6)	1,127 (7.4)	1,163 (3.2)	1,207 (3.8)	1,263 (4.6)	1,311 (3.8)
	9월 추계	1,148 (3.2)	1,035 (-9.8)	1,130 (9.1)	1,163 (3.0)	1,214 (4.4)	1,276 (5.1)	-
EU[2)]	11월 추계	309 (8.2)	328 (5.9)	427 (30.3)	422 (-1.0)	424 (0.5)	440 (3.6)	453 (3.0)
	9월 추계	309 (8.2)	323 (4.5)	428 (32.5)	422 (-1.3)	425 (0.5)	440 (3.6)	-
총세입	11월 추계	7,993 (3.0)	7,283 (-8.9)	7,762 (6.6)	8,160 (5.1)	8,473 (3.8)	8,790 (3.7)	9,084 (3.3)
	9월 추계	7,993 (3.0)	7,177 (-10.2)	7,729 (7.7)	8,105 (4.9)	8,467 (4.5)	8,832 (4.3)	-

주: 1)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20~2025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임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연방재무부, Press Aktuelles, 2020. 9. 10.; 2020. 11. 12.

- 2019년 11월 기준으로 주당 평균 매출액의 7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100만유로 이상 지원은 EU 집행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며 보조금 지급은 연방주를 통해 지급됨

● (KfW[49)] 신속대출) 직원 수 10명 미만의 기업은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없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최대 30만유로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이 큰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운용고정비 지원을 연장·개선할 계획[50)]

■ 연방재무부, 제159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2020. 11. 12.)[51)]

● (세입) 금번 추계치에서 2020년 총세입은 지난

49) 독일재건은행(KfW): KfW는 국책은행이면서 개발은행으로서 설립 초기 서독경제 부흥과 지원에 필요한 장기자금 공급, 수출금융, 개도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1990년 통일 이후 대규모 자금을 독일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0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 각종 인프라 지원, 수출금융 등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 함(김명식, 「독일재건은행의 역할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44권, 제2호, 2012, pp. 1~24)

50) 2020년 6월에 채택된 독일의 2차경기부양책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단기지원프로그램에 약 250억유로를 지원한 바 있음. 프로그램 적격사업자에게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고정운용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하였고, 보조금지급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전년동기 대비 평균 60%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어야 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51) 연방재무부, Press Aktuelles, 2020. 11.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11/2020-11-12-PM-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9월 추계 대비 연방정부 34억유로, 주정부 53억유로, 기초자치단체 14억유로 증가하는 등 106억유로 증가한 7,283억유로로 전망

- 2020년 총세입 증가는 총임금 및 급여가 지난 9월 추계 대비 0.4%p 상승한 것에 기인함[52)]
- 2021년 총세입은 2020년 10월 16일 자동차세법 개정 및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보험료 평균 추가 기여율(durchschnittlichen Zusatzbeitragssatzes)이 포함되어 9월 추계 대비 33억유로 증가한 7,762억유로로 전망

● (주요수치)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2020년 가을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추계했으며, 금년 독일의 실질 GDP는 -5.5%(9월 추계 -5.8%), 2021년 4.4%로 전망함[53)]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선임연구원>

프랑스

[예산·결산 등]

■ FY2020 제4차 수정예산법안(PLFR 4: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0-4) 발표(2020. 11. 4.)[54)]

● 2020년 제1~3차 수정예산법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치들을 포함한 반면, 이번 제4차 수정예산법안[55)]은 예산 관리 지원을 위해 편성됨

● (경제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예산법안 전망의 -10%보다 1%p 악화된 -11%로 3차 수정예산법의 전망치와 동일함

* 2020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수치는 1.3%

● (재정전망)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1년 예산법안 전망의 10.2%보다 1.1%p 악화된 11.3%로 전망됨

- 총재정수지는 -2,229억유로로 2021년 예산법안 전망보다 크게 악화될 전망

[기타]

■ 프랑스, 봉쇄 조치에 따른 기업 지원방안 발표(2020. 10. 30.)[56)]

●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0월 30일부터 최소 12월 1일까지 프랑

52) 9월추계 대비 총임금 및 급여는 2021년 0.3%p 상승한 3.5%, 2022년 0.4%p 상승한 3.2%로 전망
53) 연방경제에너지부, Artikel, Wirtschaft, wirtschaftliche-entwicklung, 2020. 10. 30.,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0.html
54)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LFR 4) pour 2020, 2020. 11. 4., 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0/PLFR4/PLFR_2020-4-W.pdf
55) 회계연도 말의 보완법으로 지출 총량을 규정에 맞추고 초기 예산법의 집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출을 개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프랑스의 재정」, 2012. 10., p. 36)
56) 프랑스 재무부, "Bruno Le Maire a présenté les mesures d'urgence économiques," 2020. 10. 30., https://www.economie.gouv.fr/bruno-le-maire-presente-mesures-urgence-economiques

스 전역에 봉쇄 조치를 시행함[57]
-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적인 사업장은 폐쇄되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권고함
- 생필품 구입, 출근 및 통학, 병원진료 등의 예외적인 외출만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이동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이번 봉쇄 조치로 인해 약 20만 기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프랑스 정부는 봉쇄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원 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함
- 행정명령으로 폐쇄되는 사업체에 대해 최대 1만유로 지원
- 관광, 문화, 스포츠 부문 기업들은 폐쇄되지 않아도 매출의 50%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최대 1만유로를 지원

● 또한, 직원 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면제 및 유예 조치 또한 강화·확대함
- 행정명령으로 폐쇄되는 사업체는 사회보장부담금 납부가 전액 면제됨
- 관광, 문화, 스포츠 부문 기업들은 폐쇄되지 않아도 매출의 50%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부담금 납부가 전액 면제됨

■ 마크롱 대통령,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조치 발표(2020. 11. 25.)[58]

● 활동연대수당(RSA)[59]이나 특별연대수당(ASS)[60]을 받는 가구에 150유로의 긴급 지원금 지급
- 부양 자녀 1인당 100유로의 추가 지원금 지급

● 개인주거수당(APL)[61]을 받는 18~25세 청년에게 150유로의 지원금 지급
- 개인주거수당을 받는 가구의 경우도 부양 자녀 1인당 100유로의 추가 지원금 지급

● 또한, 식당이나 술집 등 행정 조치로 폐쇄된 업체들에 대해 전년 동기 매출액의 20%를 보전하거나 월 1만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57) 프랑스 정부, "Discours du Premier ministre au Sénat," 2020. 10. 29.,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1836-discours-du-premier-ministre-au-senat
프랑스 정부, "Discours de M. Jean CASTEX, Premier ministre, devant l'Assemblée nationale," 2020. 10. 29.,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1832-discours-de-m-jean-castex-premier-ministre-devant-l-assemblee-nationale
58) 프랑스 대통령궁, "Adresse aux Français, 24 novembre," 2020. 11. 24.,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0/11/24/adresse-aux-francais-24-novembre
59)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 근로 소득과 함께 수급할 수 있는 수당
60) Allocation spécifique de solidarité. 실업부조의 성격을 가진 수당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업자에 지급함
61) Aide personalisée au logemen. 거주에 필요한 주거유지비를 제공하는 수당

영국

[예산·결산 등]

■ 2020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2020) 발표 (2020. 11. 25.)[62]

- (개요) 영국 정부는 당초 3~4년 기간에 대한 지출 검토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FY2021~22에 대한 단년도 지출 검토를 발표함
- (경제·재정 전망[63]) OBR 경제전망에 따르면 영국의 GDP는 2020년에 11.3% 하락하여 1709년 대혹한(Great Frost)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됨
  - 2021년은 5.5%, 2022년은 6.6%의 GDP 성장률이 예상(<표 4> 참조)되나 2022년 말까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나리오는 2021년 GDP가 추가 2%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올해 공공부문 순차입은 약 3,940억파운드(GDP 대비 19%)로 FY1944-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 대비 105.2%로 FY1959-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표 5> 참조)

<표 4> 주요 경제전망(central forecast 기준)

(단위 : %,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 성장률	1.3	-11.3	5.5	6.6	2.3	1.7	1.8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	1.8	0.8	1.2	1.6	1.7	1.9	2.0
실업률(LFS)	3.8	4.4	6.8	6.5	5.4	4.5	4.4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November 2020, 2020, p. 14, Table 1.2 일부 발췌

<표 5> 주요 재정전망(central forecast 기준)

(단위 :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공공부문 경상수입	37.3	37.3	38.2	37.7	38.0	38.0	38.1
총관리지출 (TME)	39.8	56.3	45.6	42.1	42.1	42.0	41.9
공공부문 순차입	2.5	19.0	7.4	4.4	4.1	3.9	3.9
공공부문 순채무	85.5	105.2	108.0	108.6	109.4	105.0	104.7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November 2020, 2020, p. 20, Table 1.3 일부 발췌

62) HM Treasury, Spending Review to fight virus, deliver promises and invest in UK's recovery, 2020. 11. 25., https://www.gov.uk/government/news/spending-review-to-fight-virus-deliver-promises-and-invest-in-uks-recovery
HM Treasury, Spending Review 2020, 2020. 11. 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ending-review-2020-documents

63)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0, 2020. 11. 25.,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november-2020/

<표 6>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경상지출(공공부문 경상지출)	790.0	1,028.9	892.8	863.8	895.3	927.8	965.4
자원 AME(Resource AME)	409.1	494.0	422.9	435.6	450.0	463.4	481.0
자원 DEL: 감가상각 제외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345.2	506.1	439.6	397.0	412.8	430.5	449.1
- 코로나19 지출을 제외한 자원 DEL	343.0	369.9	384.6	397.0	412.8	430.5	449.1
- 코로나19 관련 자원 DEL	2.2	141.1	55.0	0.0	0.0	0.0	0.0
감가상각(Ring-fenced depreciation)	35.6	28.8	30.3	31.3	32.5	33.9	35.4
자본지출(공공부문 총투자)	93.7	135.7	118.7	126.7	132.0	136.1	140.7
자본 AME(Capital AME)	23.3	29.4	18.3	19.4	22.9	23.3	23.3
자본 DEL(HMT Capital DEL)	70.4	106.3	100.4	107.3	109.1	112.8	117.4
- 코로나19 지출을 제외한 자본 DEL	70.4	97.2	99.8	107.3	109.1	112.8	117.4
- 코로나19 관련 자본 DEL	0.0	9.1	0.6	0.0	0.0	0.0	0.0
총관리지출(TME)	883.7	1,164.6	1,011.5	990.5	1,027.4	1,064.0	1,106.1
GDP 대비 비율	39.8	56.3	45.6	42.1	42.1	42.0	41.9

주: 1.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과 공공부분 총투자의 합으로 구성. 부처별 지출 한도(DEL)는 지출 검토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이며, 연간관리지출(AME)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임

2. 2020-21은 코로나19 지출을 제외한 자원 DEL과 코로나19 관련 자원 DEL의 합이 총자원 DEL과 일치하지 않음(코로나19 지출을 제외한 자원 DEL의 예비금(reserve)에서 50억파운드를 코로나19 관련 지출에 사용)

출처: 재무부, Spending Review 2020, 2020, Table 1.2 일부 발췌

● (지출 규모) OBR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율은 FY2020-21에 56.3%로 급증하고, 내년에는 바이러스 관련 지출이 감소하고 GDP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45.6%로 하락할 전망(<표 5> 참조)

- 지출 검토에서 FY2021-22에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부처별 경상지출은 FY2019-20 대비 연평균 3.8% 증가한 3,846억파운드로 설정
  - 다만 이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2020 예산안에서 발표한 수준 대비 약 100억파운드 감소한 금액임
  - FY2021-22 이후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부처별 경상지출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2.1%로 2020 예산안에서 제시한 가정을 유지
- 지출 검토에서 FY2021-22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추가로 550억파운드를 설정
- 또한 내년에 FY2019-20 대비 270억파운드 증가(실질 기준)한 1천억파운드의 자본지출(자본 DEL 기준)을 발표

●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영국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영국 국민에 대한 약속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지원할 예정

- (코로나19 대응) 지출 검토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올해는 추가 380억파운드, 내년은 추가 550억파운드를 지원(권한 이양 지역에 대한 자금 26억파운드 포함)

*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총액은 2,800억파운드가 넘을 전망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에는 총 1,130억파운드 이상 지출할 계획임

• FY2021-22에 바이러스 억제(백신 개발과 구매, NHS의 진단 및 추적 지원 등), 공공 서비스 지원 확대, 일자리 및 기업 지원 등을 추진 예정

- (영국 전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 균형 발전 보장, 녹색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 지원

• 인프라 투자 확대는 신규 '국가 인프라 전략',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은행 설립, 인프라 제공방식에 대한 종합적 개혁 등을 통해 지원

• 새롭게 40억파운드 규모의 'Levelling Up Fund'를 도입하여 지역 인프라 투자 및 경제 회복 지원

- (국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 양질의 회복력 있는 의료 시스템 지원, 교육 수준 제고 및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범죄 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 보장, 지역 당국 지원 등 정부의 약속을 이행

• FY2021-22에 전년 대비 NHS 지출 63억파운드 증액, 학교 예산 전년 대비 22억파운드 증액, 경찰 채용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 4억파운드,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추가 자금 3억 3,700만파운드 등

- (영국의 위상 강화) FY2021-22에 100억파운드의 ODA 제공, 안보를 위해 국방에 240억파운드 이상 추가 투자,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지원 등

- 또한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2.2% 인상(8.72→8.91파운드) 및 적용 연령 확대(25세 이상→23세 이상), NHS 근로자와 소득 2만 4천파운드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동결 계획 발표

• 이 외에도 투입(input) 대신 지출결과(outcome)에 초점을 두고 지출-성과 연계 강화, 조직의 칸막이 문화 해소, 정부투자 결정 평가지침 개선 등 주요 개혁 추진

[기타]

■ 고용 유지 보조금 제도 연장, 자영업자 소득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제적 지원 계획 발표(2020. 10. 31.; 11. 2.; 11. 5.)[64)]

● (코로나19 고용 유지 보조금 연장)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2차 봉쇄 조치와 함께 고용 유지 보조금(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지원 연장 계획을 10월 31일에 발표하였고, 이후 11월 5일에 다시 추가 연장 조치를 발표함

- (지원기간 확대) 당초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

64) HM Treasury, Furlough Scheme Extended and Further Economic Support announced, 2020. 10. 31., https://www.gov.uk/government/news/furlough-scheme-extended-and-further-economic-support-announced
HM Treasury, Government increases support for self-employed across the UK, 2020. 11.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increases-support-for-self-employed-across-the-uk
HM Treasury, Government extends Furlough to March and increases self-employed support, 2020. 11. 5.,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extends-furlough-to-march-and-increases-self-employed-support

던 고용 유지 보조금 제도를 2차 봉쇄 조치 종료일인 12월 2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10. 31.)한 후, 경제적 영향이 봉쇄기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기간을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총 5개월 연장)함(11. 5.)

- 고용 유지 보조금이 종료되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일자리 지원 제도(Job Support Scheme)는 이번 지원 연장 결정으로 고용 유지 보조금 제도 종료 이후로 보류됨
- 내년 1월에 경제 상황 개선을 감안한 고용주 분담금 증액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 유지 보조금 연장에 대해 검토할 예정

- (정부 지원 비율 조정)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현재 급여의 80%(최대 2,500파운드) 수준을 정부가 지원

* 고용주가 부담하는 임금 지원금 비율(급여 대비 비율)은 3~8월 0%, 9월 10%, 10월 20%이고 정부 부담 비율은 3~8월 80%, 9월 70%, 10월 60%였음

- 추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국가보험 및 연금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만 부담

● (자영업자 소득 지원 확대) 코로나19 고용 유지 보조금 연장 계획과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보조금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

- 자영업자 소득 지원 보조금(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의 3회차(11월~내년 1월) 보조 비율을 80%(최대 7,500파운드)로 상향 조정(2020. 11. 5.)
  - 11월 2일 발표에서 11월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수익 보전 비율을 월 수익 평균의 80%(기존 계획: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65]이었으나 추가 대책에서 11월~내년 1월 모두 80%를 적용(약 73억 파운드 규모)하기로 결정
  - 4회차(2~4월) 보조금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설정할 예정
- 보조금 청구 개시일을 12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앞당기고 보조금을 기존 계획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임

● 또한 잉글랜드에서 국가 또는 지역별 제한 조치로 사업장을 닫는 사업체에 월 최대 3천파운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2020. 10. 31.)

- 부동산 과세 표준 가액 1만 5천파운드 이하 기업은 월 1,334파운드(또는 2주 667파운드), 1만 5천파운드 초과 5만 1천파운드 미만 기업은 월 2천파운드(또는 2주 1천파운드), 5만 1천파운드 이상인 기업은 월 3천파운드(또는 2주 1,500파운드) 지급
- 이 외에도 11억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지방 당국에 제공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모기지 상환 유예 제도의 신청 종료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2020. 10. 31.)

- 코로나19로 인한 주택 소유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모기지 상환 유예 제도의 신청기한이 당초 10월 31일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기할 예정

65) 11월에 대해 수익 보전 비율을 월 수익 평균의 80%로 상향 조정하고 12월과 1월은 기존 계획인 40% 수준으로 지원하므로 3개월(11월~내년 1월) 기준의 수익 보전 비율은 약 55%(최대 5,160파운드)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아직 모기지 상환 유예를 받지 않은 경우 최대 6개월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모기지 상환 유예가 시작된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신용 정보에 기록되지 않고 추가 유예 가능

● 정부 지원 대출 제도의 신청 마감일을 2021년 1월 31일로 연장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정부 대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2020. 11. 2.)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대한 추가 자금 보장규모를 140억파운드에서 160억파운드로 확대(2020. 11. 5.)

- 재무부는 지난 7월, 해당 지역에 봄 예산안에서 발표한 지원 외에 추가로 자금 지원을 보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함

* 통상 이양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변경 사항은 회계연도 말에 확정되나 이러한 추가 자금 보장은 해당 지역이 현재 NHS 및 기업 지원과 같은 우선순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성을 제공함[66]

■ 보리스 존슨 총리,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발표(2020. 11. 18.)[67]

● (개요) 영국 정부는 녹색산업 혁명을 위한 10대 계획을 수립함

- 약 120억파운드의 정부 투자를 동원해 25만개의 숙련된 녹색 일자리를 창출·지원

● (10대 계획 분야) 해상 풍력, 수소, 원자력, 전기차, 대중 교통·자전거·도보, 무공해 항공기 및 선박, 주택 및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 포집, 자연환경 보호·복원, 혁신 및 녹색 금융

- 이번에 이 중 6개 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신규 투자를 발표

• (탄소 포집) 2020년 중반까지 두 개의 탄소 포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가 2억파운드의 자금 지원

• (수소) 수소 사용 시범 주택 등에 최대 5억파운드

• (원자력) 대형 및 소형 원전 개발 지원 및 신규 첨단 모듈형 원자로 연구개발 등에 5억 2,500만파운드

• (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확대(13억파운드),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5억 8,200만파운드), 전기차 배터리 개발 및 대량 생산(약 5억파운드)

• (주택 및 공공건물) 주택 및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주택 보조금(Green Homes Grant) 바우처 1년 연장 등에 10억파운드 투자

• (친환경 해양) 청정 해양 기술 개발 관련 2천만파운드

66) HM Treasury,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receive additional coronavirus funding guarantee from UK Government," 2020. 7. 24., https://www.gov.uk/government/news/scotland-wales-and-northern-ireland-receive-additional-coronavirus-funding-guarantee-from-uk-government

67)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M outlines his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for 250,000 jobs," 2020. 11. 18.,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outlines-his-ten-point-plan-for-a-green-industrial-revolution-for-250000-jobs HM Government,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20. 11. 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ten-point-plan-for-a-green-industrial-revolution/title

- 나머지 핵심 분야는 지난해 계획된 투자에 따라 추진될 예정
  - 에너지 혁신 펀드에 10억파운드, 자전거, 도보, 버스 등 친환경적 이동 수단 관련 50억파운드, 홍수 방지 등에 52억파운드 등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중국

[기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4개 부처, '단기 내수 확대 소비 촉진에 관한 업무방안(近期扩内需促消费的工作方案)'을 발표(2020. 11. 2.)[68), 69)]

-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할 방안 4가지와 구체적 조치 19가지를 제시함
- 내수 확대 및 소비 촉진 4가지 방안은 오프라인 소비의 '온라인화' 및 온라인 경제의 잠재력 발휘, 전염병 상시 방역하의 '서비스 소비의 신 모델'의 모색, 실물 소비 촉진 정책 시행, 국내외 생산자원 활용 및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임[70)]
  - (오프라인 소비의 '온라인화') 만성질환의 인터넷 검진비용을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하는 등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의료보험정책 개선,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유형 확대, 온라인 창업 및 취업비용 경감 등
  - ('서비스 소비의 신 모델' 모색) 요식업의 회복 지원, 연간 관광티켓 선불 발행 등 여행상품 마련, 온라인 관광 홍보활동 진행, 지역사회의 생활서비스 소비 확대방안 마련 등
  - (실물 소비 촉진 정책 시행) 안전한 가전제품 사용 안내 및 가전제품 교체를 위한 표준 제정, 가정 비상용품(의료용품) 비축 권장 목록 안내 등
  - (국내외 생산자원 활용 및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5G 네트워크 기지국 구축 가속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 재정부,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및 책임분담 개혁의 성과를 발표(2020. 11. 9.)[71)]

-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3단계 프레임워크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및 책임 분담에 대해 개혁함
  -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기본표준을 정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책임을 비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였음
  - 재정권 분담의 제도화, 합법화 및 표준화를 통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책임 불이행 등 관련 문제를 해결

68) 近期扩内需促消费的工作方案(원문),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0/29/5555891/files/9a061fc246d04a7991db940baa92df59.pdf
69) 인민일보 조문판,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8471.html
70) 내수 확대 및 소비 촉진 4가지 방안으로 '推动线下服务消费加速"触网"', 充分释放线上经济潜力', '在做好常态化疫情防控基础上，开辟服务消费新模式', '实施促进实物消费政策，畅通供需更高水平良性循环', '更好运用内外要素和资源，加大对制造业企业支持力度'을 제시
71) 재정부,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zgcjb/202011/t20201106_3618326.htm

- (1단계) 2016년 8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재정권한과 지출책임 분담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推进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改革的指导意见)'에 따라 재정권한 및 지출책임에 대한 기본 원칙,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현대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
- (2단계) 2018년 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기본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재정권한 및 지출책임 개혁방안(基本公共服务领域中央与地方共同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改革方案)'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출책임과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앙 및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
  - 중앙 및 지방 공동재정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8개 부문의 18개 공동재정 권한 및 지출책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표준화함
- (3단계) 2018년 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기본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재정권한 및 지출책임 개혁방안'을 통해 예산분야별(보건의료, 과학기술, 교육, 교통운수, 생태환경, 공공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짐

■ 재정부, 2020년 중앙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규모는 총 2조위안으로 발표(2020. 11. 10.)[72), 73)]

-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응하고 고용안정, 국민생계보장, 내수 확대 및 소비 촉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늘려 1조위안을 지원하고 특별국고채 1조위안을 발행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함
- 2조위안 중 3천억위안은 세금 및 수수료 감면에 지원하였으며 1조 7천억위안 중 1조 2천억위안의 재정지원이 완료됨(2020년 10월 말 기준)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72) 재정부,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xinhuanet/202011/t20201110_3620091.htm
73) 재정부,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xinhuanet/202011/t20201110_3620092.htm

재정포럼

2020년 12월호 통권 제294호

■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 행 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 · 제작/** 김석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0년 12월 15일 발행 / 제24권 제12호(통권 제29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7. 17

질병관리청 KDCA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❶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❷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❸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질병관리청
KDCA

• 2020년 12월 15일 발행 • 제294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414-2134 • 월간 • ISSN 1226-2269 12